분 역시 홍성은의 기억이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검찰에서도 이미 홍성은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의 증거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한겨레신문 1991.5.24.자 참조). 홍성은이 김기설의 수첩을 소지했던 시간은 김기설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5.7. 밤10:30경부터 다음날 전민련선전부장 원순용에게 건네준 5.8. 12:00경까지 시간적으로 대략 13시간 가량되며, 그중에서도 홍성은이 잠잔시간 및 5.8. 아침에 일어나 학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 시간을 빼면 불과 한시간도 수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성은은 수첩을 "자세히 살펴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특별히 수첩의 형상이나 기재내용, 쓰여진 필기구의 종류나 색깔에 관하여도 기억하려고 마음먹은 바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유일하게 김기설이 5.7.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첩을 펴서 확인했다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홍성은은 대체로 수첩의 내용이나 특히 사용된 필기구의 색깔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점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노트나 책등에 쓴 필기구의 색깔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더듬어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될 사항입니다. 필기구의 색깔에 관한 기억이 흔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때 작성한 방명록 기재시 사용된 필기구의 색깔에 관하여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곽대순의 진술에 의하여도 반증됩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직접 방명록 서명을 권유하였으며, 김기설이 파란 싸인펜으로 서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이 방명록을 찾아 한겨레 신문사에 보내기까지 하였으면서도, 당시 필기구의 색깔을 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역시 증거로 제출한 성남 터사랑 청년회 창립대회때 김기설과 같이 참석하여 방명록에 서명한 바 있는 전현철은 당시 방명록이 일반 노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은표지에 백지가 철해져 있는 통상의 방명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설 수첩에 관한 홍성은의 기억은 반드시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홍성은의 기억에 의존하여 김기설의 수첩여부를 가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2. 결백의 증거들

가. 5.7. 밤의 전화

김기설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은 5.7. 밤 11시가 훨씬 넘어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성은은 이때까지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통화한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홍성은은 분신하겠다는 김기설을 만류하지 못하고 10:30경 헤어져 전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와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집에서 다시 나왔을 지도 모릅니다). 공중전화 앞에 서서 홍성은은 우선 김기설의 아버지에게 김기설을 대신하여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가서 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번도 피고인 집에 전화를 건 일이 없고, 그리고 분신하겠다는 남자친구를 울면서 만류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몹시 허탈해 있던 그때, 그리고 피고인이 자고 있을 지도 모르는 그 늦은 시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을까요. 홍성은은 김기설이 마지막으로 "'유서를 써야 하는등 신변정리를 위해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나의 손을 뿌리치고 자취집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에 김기설은 자취집으로 돌아가 이미 유서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실제로는 방으로 들어 가다가 분신얘기를 듣고 김기설의 소재를 백방으로 찾고 있던, 같이 자취하던 임근재를 만나 인근 포장마차 집에 앉아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홍성은이 김기설과 헤어진 마당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까. 그 이유는 김기설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설이 홍성은에게 피고인집에 전화걸도록 부탁했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각에, 처음으로 홍성은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홍성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기설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강기훈에게 전화하여 가르쳐 주라고 부탁하여 전화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이 피고인의 유서대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한 5.7. 밤의 이 전화가 실은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가장 확실한 정황이라고 이 자리에서 제시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김기설이 분신자살 하기 이전부터 이를 알

고 김기설 사후 모든 문제를 피고인이 알아서 마무리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어버이날인데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의 유서도 대신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을 종합할 때 만일 피고인이 정말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장례문제등을 책임지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김기설의 가족관계 및 그 연락처는 최소한 알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유서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가족의 연락처도 모르겠습니까. 최소한 실제로 연락을 하던 안하던 김기설이 그의 가족의 연락처를 유서를 써준 사람에게 미리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김기설은 홍성은과 아현 전철역에서 헤어지면서 유서를 쓰러 자취방에 간다고 하며 마지막말을 남기고 돌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강기훈에게 전화하여 가르쳐 주라" 고 홍성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김기설이 홍성은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김기설과의 인적관계에 있어서 홍성은 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김기설의 가족관계나 연락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설의 부탁은 적어도 홍성은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이후 김기설이 피고인을 만날 계획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7. 10:30 이후부터 그가 분신자살 할 때까지 피고인을 전혀 만날 계획도 만난 일도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곧 만날 사람에게 그것이 암호가 아닌한 특별히 자기 가족 전화번호를 아리켜 주라고 제3자를 통하여 전화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기설은 유서를 쓰러 자취집으로 갔습니다(실제로 유서를 쓰러 갔으나, 임군재를 만나 다시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분신까지 피고인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홍성은은 김기설로부터 분신 결심을 듣고 가족관계 및 친구들 연락관계 사항을 상세히 전달받고 김기설과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피고인은 김기설이 죽으면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김기설의 가족의 전화번호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떠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피고인은 김기설의 분신 의도도 전혀 몰랐으며, 방조한 일도 없으며, 유서는 쓴 일도 없다는 바로 그 진실입니다. 피고인은 결백합니다.

나. 검찰의 필적오해에 의한 반증

홍성은이 1991.5.17.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서대필 의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검찰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제시한 문서가 너무나 유서와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홍성은은 이때부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의혹과 혼돈속에 피고인과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고, 분신이후 부터 검찰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사실상 기억을 강요받으며 피고인과 이영미, 김진수 등의 말을 유서대필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기억의 저편에 있던 말들이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띄며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로하며 했던 말들이 갑자기 유서대필 은폐의 뉘앙스를 갖는 것으로 재생됩니다. 자기를 기자회견에 내보낸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최대의 실수' 라고 농담처럼 한 김진수의 말이 범상치 않게 들리고 5.12. 김기설 장례식을 마치고 얘기하던 장례관계 말들이 갑자기 어째서 나온 것인지, 그게 언제인지 혼동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피고인이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기수첩에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기억의 프로그램이 뒤바뀝니다. 김기설로부터 받은 메모도 피고인이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홍성은의 이와 같은 의식변화의 과정은 1991.5.17.에 작성한 그의 자술서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갑자기 홍성은의 정신을 의혹과 혼돈의 뎡어리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검찰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제시한 문서가 바로 유서필적과 너무나 똑같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압수물 9-1, '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으로 된 편지입니다. 홍성은은 "유서와 증9-1호가 가장 확실하게 비슷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성은에게 제시된 이 편지는 검찰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필적으로 가장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언론이 공개해 했던 압수물 9-1과 9-111내지 116의 의사록이 검찰이 숨겨논 비장의 무기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문서는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였을 때 검찰은 이미 검찰내부의 문서분석실에서 유서필적과 가장 닮은 필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동일 필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사진을 찍어 놓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에 출두하기전 피고인의 집으로 부터 압수한 위 문건들이 유서필적과 동일하며, 피고인이 쓴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심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위 편지를 홍성은에게 보여 피고인을 유서대필자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영미에게도 보여 유서와 위 편지의 필적이 같지 않느냐고 윽박질렀으며, 숭의여전 학생회장 이보령에게는 의사록(1991.6.13.자 자술서에 '회의록' 이라 되어 있는데, 압수물중 '회의록'은 없으므로 의사록으로 추정된다)을 보여주어 같지 않느냐고 동의를 강요했습니다. 검찰이 위 자료들을 보여준 까닭은 두말할 나위없이 피고인이 유서대필자라는 것을 참고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자료들은 검찰 스스로도 가장 유서와 필적이 흡사한 자료라고 믿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홍성은은 검찰의 이와 같은 확신에 따라 그의 정상적인 기억체계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와 같은 위 자료들에 대한 필적확신은 피고인이 출두하자 산산히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위 자료들은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검찰이 얼마나 낭패감에 휩싸이고 당황해 했을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와 같은 필적에 대한 엄청난 오해, 틀림없이 검찰청내의 문서 분석실의 검토가 뒷받침되어 유도되었던 엄청난 오해, 이 사실은 이 사건 수사가 애초부터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 있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똑같다고 확신했던 자료들이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유서대필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다. 수많은 객관적 필적자료들 및 관련 증인들

지금까지 우리는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필적자료들을 제출하였고 40여년동안 필적감정에 종사해 온 일본인 감정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각 자료 하나 하나가 모두 피고인의 결백함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던 간에 본래의 것 그대로 이기 때문에 더이상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눈이 있으면 와서 보면 됩니다. 선입견 없이 보면 진실은 곧 다가옵니다. 분명하

잖습니까. 꼭 필적감정을 해야 합니까.

라. 수첩 복사본

변호인측 증거서류 중제20-1, 2호로 제출된 수첩의 복사본은 전민련이 제출한 김기설 수첩이 본래의 김기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위 자료는 홍성은이 가지고 있던 것의 전화번호부 기재부분 3매를 나란히 앞뒤로 복사하여 2부 복사한 것입니다.

이 복사본의 중요함을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은 전민련 인권위원장인 서준식이었습니다. 그는 6.25.경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된 후 이 사건 관계로 검찰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복사본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성동구치소로 수감된 후 전민련 실무자들에게 5.8.에 한 수첩 복사본의 행방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시 수첩을 복사했던 최경환, 이효경을 찾아내고 그 복사본도 받아 변호인단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복사본이 전민련 김기설의 수첩 원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 방식

김기설에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첩의 전화번호를 적을 때 특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피고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 예컨대 '777-8888'처럼 국번호 다음에 "-"로 연결하는데 반하여, 김기설은 예컨대 '777. 8888'처럼 국번호 다음에 "."로 연결하여 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이한 전화번호 기재 방식을 전민련이 제출한 김기설의 수첩에서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탄할 만하게도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습성은 정말 특이한 기재 방식입니다.

압수물 9-24는 피고인의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서 우리는 피고인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 국번호 다음에 "-"로 연결하여 쓰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기재 방식에 있어서의 김기설의 특징, 이것 역시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이 김기설의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피고인이 초능력을 가진 홍길동인가.

이제 우리는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증거자료들로부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습니다. 유서는 김기설 자신이 쓴 것입니다. 그래도 만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메모, 편지, 방명록, 수첩, 사진 등등 이 모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료를 피고인이 위조, 변조 또는 조작했습니까. 피고인은 검찰이 유서대필 사실을 발표한 이후에 삼엄한 경비속에 오도가도 못하고 명동성당내에 있다가 검찰에 출두하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 법정에 선서하고 증언한 모든 사람들과 유언, 무언으로 연락하여 이들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했습니까. 또 일본인 필적감정 전문가로 하여금 필적감정을 조작하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전에 만나 보거나 알지도 못한 이 증인들이 피고인이 자살방조한 사실을 감싸주기 위하여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짜로 만들로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까. 피고인이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초능력을 가진 신출귀몰한 홍길동입니까.

다. 기타 검찰측 증인

(1) 장병호

장병호는 김기설의 세째 매형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김기설의 큰 매형과 누나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자신이 이건 책표지 필적 2매를 뜯어 제출하였으면서 동 필적이 같은 책에서 뜯은 것인지, 다른 책에서 뜯은 것인지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물어 본 바도 없고,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김기설이 다친 상처가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동인의 증언은 이 사건 유서대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이재구

이재구는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서가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동인은 그 근거로 김기설과 평소 친하게 지내고 낙서도 같이하고 김기설의 글씨를 모방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김기설의 필체를 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위 진술은 증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특히 증인은 증인이 국민학교 5, 6학년 때 시작하여 중학교 때, 김기설이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 약100회 가량 같이 낙서하고 김기설을 글씨를 모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과 김기설의 나이가 5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동인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없습니다.

제 4.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1. 검찰은 피고인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하고 1991.5.16.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피고인의 장서, 유인물, 노트 등을 압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수신:김정훈, 발신:김명훈>의 필사본 1건(압수물 9-1), <혁명의 불꽃 2,3,4,8,10호>(압수물 9-98,100,101,103,104), <재건대회의사록>(압수물 9-111내지 116)등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하였고, 같은해 8.21. 피고인을 '혁명의 불꽃'및 '혁노맹'에 가입하여 혁노맹 관련자 박대호, 노성철 등과 회합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 탐독,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 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의도는, 피고인이 소수정예의 급진적 사회주의자 그룹에 소속된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의 10대신조를 아느냐, 살부회, 곧 자신의 아버지를 스스로 죽일 수 없으니 회원끼리 돌려가며 아버지를 죽이는 역할을 대신하는 모임을 아느냐 라는 등의 해괴한 질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3. 또한 검찰에서 주목한 것은 , 피고인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남겨놓은 필적 중에서 유서와 유사한 필적을 발견한 점입니다.

검찰은 위 압수물(9-1)필사본을 유서와 같은 필적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홍성은 등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유서가 대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왜곡된 진술을 받아내는데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필사본은 박대호나 조성철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4. 피고인은 한때 혁노맹 관련자들과 연관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정작 1989.8.14-19.에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에 있는 자리회관에서 행하여진 본격적인 재건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 같은 해 10.경 까지는 가끔 연락을 취하다가 새로운 지도부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한 불만과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약속장소에도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 이후 그들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당시의 상황을 혁명적 정세로 볼 수 있는지와 임시혁명정부의 구성에 관하여 당시의 상황을 혁명적 정세로 볼 수 있는지와 임시혁명정부의 구성에 관하여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혁노맹의 중앙위원들은 피고인을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조직 외곽의 인물로 보아 피고인에게 재건대회 의사록을 전하여 준 것으로 압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이 비밀조직 보다는 공개조직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사회변혁을 희망하는 비판세력에 속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혁노맹과 같이 비밀혁명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은 꺼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전민련과 같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일원으로 머물면서 나름대로의 민주화 활동을 하여왔을 뿐입니다.

5. 혁노맹 관련자들은 이미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혁노맹이란 조직도 이미 와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이 1989년 하반기에 혁노맹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때에도 피고인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잘 은폐되어서가 아니라 혁노맹의 조직활동과는 지극히 미미한 연관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뒤늦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마치 분신사건에 배후가 있고 그 배후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현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전민련이라는 공개조직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적인 처사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방조 부분이 무죄가 되더라도 조기에 석방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저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실중 혁노맹 가입 부분은 무죄입니다.

제 5. 결 론

1. 이제 이 긴 변론도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전민련을 포함한 재야운동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과 편견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변호인도 처음에는 그와같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유일한 인물이며 김기설군의 여자친구여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던 홍성은양은 이 법정에 나와서는 진실의 상당부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대학 3년 중퇴인줄 알고 있다가 고등학교 3년 중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여자의 자존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기설군을 소개시켜준 피고인이나 친구 이영미에 대한 감정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증언대에는 처음 앉아보았을 터인데도 짐짓 태연한 듯한 자세와 이 사건의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에서 , 우리는 한 젊은여성의 미묘한 감정변화의 편린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3. '오니시요시오'씨가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인 이었더라도 검찰관이 그토록 심한 대접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범한 몇가지의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와 '오니시'씨의 그것을 비교하여 볼때 어느쪽의 필적감정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어느 편이 보다 성실하게 감정하였는지는 두개의 감정서를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감정의뢰를 요청하였던 것은 외국인의 감정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고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고육지책 이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건이 우리나라의 문서감정 업무에 보다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 이 변론의 서두에서, 상식을 초월한 이 사건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사회는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비 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의 대부분이 드레퓌스(DREYFUS)가 유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의 무고함을 확신한 '끌레망소'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고인 강기훈의 승리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지금 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강기훈이가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강기훈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변호인단을 대표하여 변호사 **유현석, 김창국, 박연철, 이석태**

1991. 12. 4.

강기훈 최후 진술서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과학적 사고 방식과 이성적 판단력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대중의 다양한 생각이 사회적 발전을 추동한다는 다원주의의 발전과, 오랫동안의 대립과 반목을 청산해가는 바탕위에서 이념적 대립과 적대감이 해소되어 가고 긴장상태에 있던 동-서가 화합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사상과 제도의 차이로 부터 비롯된 대립과 투쟁, 그리고 극단적인 편견으로 대표되는 메카시적인 사고방식도 이젠 그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땅 한반도에선 아직까지도 이런 구시대적인 편견과 아집의 영역이 허물어지기는 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6공화국, 특히 89년 공안정국 이후 하루 평균 4.4명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혹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맞섰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위 유서대필 사건과 별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사건이 바로 이 구시대적인 편견과 아집에서 비롯된 비극이요, 이런 배경하에서 검찰 등 수사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희대의 조작극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이 구태의 악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공산주의 컴플렉스와 그로 비롯된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 했다면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요, 역사와 진실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현실이 되어 우리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두진술에서 밝혔다시피 소위 유서대필 사건은 재야 민주화운동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타격하기위해 전면전에 몰두하고 있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사기 조작극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을 빙은 엉터리 필적감정과 참고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강압수사, 그리고 자신들의 시나리오 완성을

위해 부적주아 각고의 노력을 해온 서울지검 강력부의 창조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중 국과수의 필적감정의 허구라는 것은 전면전 사회국 업무인지에 대한 감정에서 기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 검찰의 범인단정에 가까운 견디기 어려운 허위사실을 언론에 조직적으로 발표할 때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사실들이 조만간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믿었던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제가 소신을 갖고 일해왔던 제 직장에서 배워왔고, 품어왔으며, 가져왔던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이성적 판단에 따른 최소한의 양식을 존중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포기하고 아니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목불인견으로 달려들고, 이제까지의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모든 사실들을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검찰수사 당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 불가능한 공상적인 시나리오만을 완성하려 하는 검찰을 제 상식적 견지에서 인간이라고 인식한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자면 제가 사무실 동료인 기석의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필력이 부족한 그 대신 유서를 써 주었다는 것인데 새삼 그 누구가 같이 일하는 동료의 죽음을 부추기고 유서를 대신 써준단 말입니까?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사회일각을 바라보는 이들의 편견을 목도하고서 정신이상자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신매매, 마약, 각종 강력범죄 등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주 임무인 강력부 수사관들이기에 세상의 모든것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나, 혹은 이들 범죄자들의 인식과 동화된 것인지 아니면 선량 피의자가 무죄라는 신념이 들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엮고 넣고야 마는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병폐가 지금 이 순간 까지의 과정을 빌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에 나타나 있듯이 검찰은 분신자살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을 구체적, 논리적이 아닌 상상에 기초하여 명시하여 그들의 인식단면을 노출시켰다는 것과 서준식, 인무영씨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구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면전 동료인

인무영의 경우 검찰이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들의 판단상 제 공씨보다 그의 공씨가 더욱 유서와 유사하게 보인다 하여(이 부분에 대해선 모두에 진술한 것처럼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 검사가 무영의 필적을 가져와 이적수가 있느냐며 그의 필적과 수첩등을 대조했다는 사실과 수사가 진행되던 중간중간마다 "이놈아(무영이를 가리킴)공씨가 맞는데"하며 수차례 증언거린 사실로 증명이 가능합니다)조사를 벌이다가 현의점을 발견치 못하자 이전까지 전혀 수사대상에 올라 있지도 않던 공안관련으로 넘겨 구속시켰으며, 서준식 전변련 인권위원장의 경우 소위'유서대필 공방'이 한창이던 당시 저의 결백을 확신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를 밝히는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여 보복적 구속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담당 수석검사이며 서울법대 68학번 동기동창인 신상규검사가 서준식위원장의 사전영장 발부, 구속및 이후 공소관계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7년간의 옥고를 치루고 난 학교동기이며 친구를, 망자의 유서에 이름이 거명되었다 하여 처음엔 분신배후로 몰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했다고 하여 3년만에 공안관계로 재수감시키는 것을 지켜본 저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비애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신상규 검사가 스스로 이야기 하듯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무영과의 대질신문이 진행되던 당시 제가 "무영이에게 혐의가 없으면 그만 풀어주어야 할거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하다 풀어주는게 어디 있느냐. 대폭혐의로 않되면 다른 것이라도 엮어 놓고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검찰관들의 대답속에서 저는 이 사건 전반에 걸쳐 당신들이 취했던 태도와 수사방식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혹여 비난에 가깝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이 사건의 사회적 도덕적 파장과 그 성격을 너무나 극명히 드러내 주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사건은 개인관계를 뛰어넘고 있으므로 개인적 비난이 아님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이야 서로 적대하는 관계로 마주보고 앉아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야 그동안 검찰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해 가한 모든 것에 대해 하해하고 용서할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곁길로 빠졌습니다. 이제 몇가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서 느낀 점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정황관계 증거로 검찰이 지난 7월 12일 언론에 발표한 대부분의 것은 제 학교 후배이며 기선이 친구였던 홍성은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중의 대부분이 검찰이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발표하였고, 일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사건초기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언론에 흘려진 것은 둘째 치고라도 증언, 진술한 내용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저를 경악케 합니다. 먼저 제가 분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왜곡한 그 첫번째입니다. 5월 7일의 전화통화는 사실 기억이 거의 미미한 정도였을 뿐이었습니다. 두번째는 기선의 사후 성은을 위호하기 위해 동창들과 만났던 일들을 대책회의라고 왜곡한 점 입니다. 세번째 검찰은 마치 홍성은의 진술인 양 하면서 5월 10일 성은의 연락을 받고 저와 둘이 만났을 당시에 제가 성은의 수첩 뒤에 "김기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검찰에 가서 이 공씨를 기선의 공씨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일간지에 허위사실(아마도 검찰의 상상인 듯 합니다)을 유도시켰습니다. 물론 써준것도 사실이 아닌은 제가 누차 밝힌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필적관계 수사에 있어서도 억설과 공상으로 일관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고 단정하다시피 한 저의 집에서 나온 메모지를 제 공씨로 단정해 버린 사실은 구속영장의 제 가명란에 기재되어 있던 "김명훈"이 공소장에는"김정훈"으로 바뀐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어, 그간 검찰은 육안으로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필적 관계 수사를 진행시켜 왔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기선이가 과거 머리를 다쳤다는 사실로 들어 정신병자라고 단정하다시피 하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과정, 지금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차이를 거짓말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보다는 사실의 왜곡과 편의적인 해석을 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며, 일일이 구구하게 설명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검찰은 허위사실을 사건결과 발표라 하여 언론에 유포시켜서 국민들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고, 우롱하였을 뿐만아니라 사건 초기 부터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진실을 가리는 폭거로 일관했음이 이런 부분적인 사실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 검찰은 사실에 대한 친착한 접근과 규명보다도 공명심과 출세욕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와

억측, 언론공세를 통한 국면여론의 초도를 통하여 5월 당시 강경대 열사 죽음 이후 들끓기 시작하던 정권의 부도덕성과 반민주성을 질타하는 국민적인 항의를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희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사건 초반부터 지금까지 언론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최소의 상식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언론이 이토록 한 개인에 대해서 폭력적일 수 있었던가를 뼈저리게 느낀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진 처인으로 단정하고 취급될 수 없다는 고등학교 때 배운 이 소박한 민주주의의 원칙은 고사하고라도 사실관계와 실체가 명확치도 않은 것들을 검찰의 발표라 하여 대서특필 하고, 심지어 모 일간지에선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조차했던 이 사실들은 저와 제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상업성으로 치환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언론사 끼리의 경쟁에서 짓뭉게지고 무시될 때 느끼던 비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공표된 기사를 번복하기 힘들 듯 그만큼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할 때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로인한 어이없는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켰더라면 제가 지금 여기에까지 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의 횡포에 가까운 태도는 지금에 와선 조금은 개선된 듯합니다만, 벌써부터 모일간지엔 이 사건이 영원한 미궁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든가 하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며, 언론이 국민의 여론을 선도하기 보다는 사실규명을 방해하기 조차 하는 것을 보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미궁에 빠질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되고 이미 그 사실적 진실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필적감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특히 국과수 감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국과수 필적감정은 제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 아닙니다. 이전의 범죄수사에 필적감정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서 제 상식으로는 그것이 무척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오차율이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진 바대로 국과

수는 최소 4명을, 검찰은 6명의 필적을 동일한 사람이 쓴 필적으로 감정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異同불능이라고 감정한 글씨가 다른 글씨가 되는 한편 같은 글씨로 감정한 것이 異同불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필적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게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제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한 국과수의 필적감정은 결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수사당국의 주관적인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얼마전 이 법정에서 한국을 잘 모르는 일본인 감정인이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경 일본에서 그런 필적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언론으로 부터 전해 듣고 기쁨보다는 참착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실을 위한 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슬픈 현실과 함께 사실의 인과관계나 상식적이고 건전한 판단을 꼭 감정으로 공신력을 빌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은 일본인 감정가의 증언 이후 하나가 추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그 감정인의 극히 부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보다 진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에 출두할 당시에 그 어떤 부분보다도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그 허황된 말들이 무리없이 "그럴수도 있구나"하고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섬뜩한 느낌이 들었으며 지금까지 그 때의 그 느낌은 여전합니다. 거의 매일 신문의 사회면은 장식하는 강력사건들, 돈몇푼에 사람을 죽이고 고귀한 인격을 거래하며, 자신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인명을 해치는 이 각박하고도 무서운 현실이 "아 그럴수도 있단 말인가"하며 경악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는 가운데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상식의 뒤안에서 "혹시 유서를 대신 써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비상식의 상식을 용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가치관이 혼란되고 극단적인 배금주의와 비인간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인하며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취급되는 그런 비상식의 상식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몇백년전에도 있었을까 싶을 일들은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이 땅 한 반도에서 발생하게 끔 했던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 사건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확실히 척결해내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서

대한 사건으로 어이없는 비상식의 상식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죽어서도 명예찾지 못한 고 김기설등지와 저, 그리고 제 가족들과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홍성은을 비롯한 몇몇이 아니라 바로 우리중의 그 어느 누구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은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희생의 댓가와 땀과 눈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동료의 죽음을 부추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이 재야라는 말은 정부당국의 반민주성 반민중성에 항의, 목숨마저 내던졌던 수 많은 역사들의 고귀한 죽음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돌려져야 할 말입니다. 지난 5월 8일 기석이가 서강대에서 분신한 직후 서강대 박홍총장은 "우리 사회에 죽음을 부추기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는 요지의 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이 발언의 여파는 곧이어 정구영 검찰청장의 "분신배후 수사 지시"로 이어졌고 고인의 유서에 거명된 전민련의 서준식 인권위원장과 김선택 사무차장이 분신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 치기어린과 어불성설을 구차스럽게 여기서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처음부터 수사당국은 유언비어에 가까운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들을 조직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유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옥상위에 흰 전퍼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후에 분신광경을 보고 옥상간 서강대생으로 밝혀짐)", "사이터가 발견되지 않았다(없었다)", "옥상문을 혼자서는 열 수 없다(후에 열리는 것으로 밝혀짐)" 등의 국가최고수사 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유언비어들만 만들어 내더니 이젠 유서대필입니까? 이 지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회에서 누가 젊은 청춘의 목숨을 앗아가는 배후입니까? 재야인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젊은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조직적 배후가 재야입니까? 아니면 검찰입니까? 동료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의 뜻을 기리는 사람들이 분신의 배후세력입니까? 아니면 식추된 도덕성을 회부, 만회하려는 정치적 목적하에 재야민주단체가 몰담라 있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이 분신의 배후입니까? 최소한 한가지 사실은 분명합니

다. 지난 5월 8일 이후 전남대에서 분신했던 한 노동자의 유서에는 "도대체 누가 분신을 배후조종한단 말인가"라는 요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검찰은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질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6월 24일 검찰에 자진출두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가지 바 있습니다. 당시 한달여에 걸친 농성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있던 가운데 거의 매일 같이 정·사복 전경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며 저를 찾아오셨던 어머니도 이날 제게 담담히 성명서를 읽어내려 가는 가운데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 저는 지쳐서 파리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걱정을 수 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검찰에 가서 어떤 수사관으로 부터 "왜 쓴 것을 그리 하느냐"며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 두번째 서는 것인데, 그 첫번째는 85년 대학교에 다녔을 당시였습니다. 당시 전두환정권하에서 끝내 개헌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농성사건에 제가 가담하여 2년의 형을 받았을 때입니다. 제 어머님은 제 면회를 위해 의정부 교도소, 성동구치소, 영등포교도소에 있는 동안 수 많은 눈물을 뿌리셨습니다. 큰아들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기 위해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제게 처음 눈물을 보인 것은 형이 확정되어 마산교도소에 도착한 다음날인 86년 9월 9일,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낯선고 물설은 고장에 아들을 면회키 위해 내려온 그날 마산교도소 접견장에서 였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고 생전 처음 와 보는 곳에 발을 디뎠었다는 고립감보다는 저를 더 슬프게 했던 것은 핼쑥한 어머님의 얼굴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가족만이 특별히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꺼운 유리벽 사이로 안타까운 눈길만 서로 확인한 채 돌아서는 어머님의 모습은 이 땅의 한을 가진 모든 어머님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6월 24일 그 때의 그 눈빛, 그 모습을 또 다시 다소곳이 명동성당 한편에 앉아서 의연함을 잃지 않던 어머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개월에 걸친 구금생활동안 편치 않은 몸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와 그 때 마산교도소보다 더 두꺼운 이중창 너머로 안타까운 눈길만 제게 던지고 계십니다. 제가 특별히 효자도 아니면서 이런 이

아기를 법정에서 하는 것은 지난 8월 추가 기소된 "국가보안법이라는 혹"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몹쓸 처를 지은 처인으로 단정되어 세상의 혼갖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다닌 5개월의 면회길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인간의 눈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더 이상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언청난 고통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만을 확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나마의 고통이 저와 제 가족에겐 이미 너무나 큰 것이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고난의 역사속에서 샛별처럼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반대로 가식과 허위는 그 명이 짧아 감추어진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없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둔갑되어도 사실은 머지 않아 참모습을 띠며 백일하에 밝혀지게 됩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경험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확실히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명제는 최근 몇개월동안 제 좌우명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소위 이 유서대필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너무나도 깨끗하고 떳떳하며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으면서도 무거운 마음이 제 가슴속 한켠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사건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지나간 우리역사에서 단지 정치적이었다는 이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못한 예는 상당히 여러번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묻혀져 있는 시간은 우리의 역사를 퇴보하게 하고, 무수히 많은 재난을 부릅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우격다짐 발고, 그것이 사실인양 광범히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에 "유서를 대신 써주다니 그럴수가 있는가"하는 관념이 언연히 존재하는 데다가, 만일 사법부에서 마저 이를 인정한다는 끔찍한 가정은 모든것에 대한 절망을 의미할 뿐입니다. 비단 이것이 저 한사람의 불행이겠습니까? 모든것이 정상으로 되돌아 갈 때까지의 기간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것에 대한 희망의 단절이요, 처절의 시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입김이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백지에 한글자를 쓰는 마음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5개월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허위가 진실로 둔갑되어 버리는 기막힌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하겠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사람이 무참히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든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는 현실에서 예지와 공명정대함으로 옳바른 판결을 해 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역사에 다시는 허위가 참으로 둔갑되는 기막힌 일들이 반복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이야기 두가지와 감사의 말씀만 전하고 진술을 마칠까 합니다. 그 첫번째는 제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각종 유인물이나 문건을 2년 가까이 폐기시켜 버리지 않은 그 게으름과 어리석음 입니다. 견해의 일치여부와는 관계없이 시종 저를 부끄럽게 했던 첫번째 주제입니다. 두번째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제가 전면련 동료인 인무영의 글씨를 보고 유서가 대필되었음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일에 대해서 입니다. 물론 사건의 발단은 검찰의 판단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나 저의 유약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쉽게 검찰의 대필주장에 동조했던 것이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의혹과 당혹감을 던져 주었기에, 그리고 설령 지금은 현의가 벗어졌더라도 동료 인무영은 다른 건으로 역겨져 아직까지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평생을 다해도 씻지 못할 동료로서의 처소한의 신뢰를 한때나마 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가질수 있는 모든 시간을 바쳐서라도 저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상응한 사처를 하겠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명동성당 농성에서 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언청난 충격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무렵 제 건강과 정신상태를 염려해주던 대책회의(국민회의)관계자 분들과 전면련의 동료들, 특히 저를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해 주신 서준식 선배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농성도중 만난 수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명동성당 신도 여러분, 특히 크나큰 압력하에서도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준 김수환 추기경님과 경갑식 신부님이하 모든 성당관계분들, 카톨릭 단체 여러분, 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셨던 김창국, 박연철, 이석

태 변호사님 이하 10여분의 변호사님들과 기독교대책위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외에도 헤아릴 수 없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루 또는 이틀간격으로 밤을 새며 조사를 받을 때 함께 고생한 서울구치소 측정관 담당님들 또한 매우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제 일신만을 염려해 주신 부모님들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991.12.4

전민련 총무부장 강 기 훈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의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기훈씨가 4일 오후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강씨는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았다.

KNCC 감정서 공개

자료 김기설 열사의 유서 감정서(G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7월 18일 오전 9: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31일 조사위원회가 CCA(아시아 기독교협의회)에 의뢰한 필적감정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회견에는 CCA 국제위원회 총무인 Clement John, 조사위원회 위원장 박형규목사와 김찬국교수, 홍성우 변호사등이 참석하였다.

조사위원회가 CCA에 의뢰한 문서는 김기설씨 유언서(사본)와 전민련수첩(사본), 승의여전 메모(진본), 강기훈씨 87년 옥중서신(진본) 등 모두 9종이다.

CCA의 의뢰를 받아 필적감정을 수행한 인물은 大西芳雄(오니시 요시오)이라는 사람으로 1948년부터 1979년 정년퇴임시까지 동경국립박물관의 문부기관(고문서나 미술품을 감정, 수집, 정리하는 전문가)으로 일했으며, 1951년부터 경찰청이나 변호사가 의뢰한 필적감정에 종사하였다. 그는 1974년 일본경시청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필적감정 부분에서 개인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감정인협회 대표감정인 - 회장 격) 현재도 매년 30건의 형사, 민사재판의 필적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니시 요시오씨의 필적감정 결과 김기설씨가 작성하였다는 전민련수첩 등 6종의 문서는 유서필적과 동일하며 강기훈씨의 1987년 옥중서신과 1991년 5월 21일자 필적은 유서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 정 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회, 일본기독교협의회로 부터 필적감정을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달하였으므로 이에 회답합니다.

1991년 7월 9일

東京都杉竝區上荻3-13-21

東京國立博物館名譽館員

감정인: 大西芳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 귀하

감 정 사 항

1. 하기(下記) 1의 유언서의 필자는 누구인가?

① 유언서	2통(사본)
② 수첩	4장(사본)
③ 강기훈(姜其勳) 본인의 옥중으로 부터의 필적	2통
④ 강기훈 본인의 최근 필적	1통
⑤ 승의여전 메모	1통
⑥ 방명록 노트 (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⑦ 상황일지 (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⑧ 봉투 (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⑨ 이력서	1통(사본)

위의 ②와 ⑤-⑨의 필적은 김기설(金基卨)의 것이다.

감정주문(鑑定主文) 및 이유의 본문에 나오는 감정자료는 위에 나오는 ○안의 숫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감 정 주 문

1. 유언서의 필적은 ② 및 ⑤-⑨를 쓴 김기설의 필적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으며 김기설이 직접 쓴 것이다.

강기훈이 쓴 것은 아니다.

감 정 이 유

①의 2통의 유언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2통의 유언서의 필적은 괘선(罫線)이 없는 백지에 만년필과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횡서(橫書)로 씌어져 있으며, 맨끝에 각각 서명이 되어 있다. 횡서의 각 행을 보면 2통 모두 가로 일직선으로 쓴 것과 말미를 상하로 올리거나 내린 것 등 도합 3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문절(文節) 및 각 행간의 간격도 넓고 좁음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

각 문자는 해서(楷書)체가 아니라 속필(速筆)을 사용한 행서(行書)체로 되어 있으며 각 자획선(字劃線)에 주저함의 흔적이 전혀 없이 선(線)에 늘임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각 문자의 결체를 보면, 종선(縱線)을 하방(下方)으로 길게 늘이는 필벽(筆癖)이 보이며, 일정한 길이로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각 자획선의 필법을 보면 횡선(橫線)에서는 직선적 필치(直線的筆致)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多用)하고 있다.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直曲線的 筆致)로 수직방향 이외에도 좌하방(左下方)으로 사선(斜線)을 그어내리는 두 가지 종류의 필법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감정자료의 김기설이 쓴 ②의 필적은 수첩 4장 중에서 앞의 2장은 전화번호부, 뒤의 2장은 일기장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 볼펜류의 필기구로 그때그때 횡서로 각 문자를 난잡하게 작게 쓴 것이다. 각 문자군(文字群)은 수정 아니면 극단적인 곧올림(역주: 문장 말미가 올라가도록 쓴 것)으로 씌어져 있으며, 해서(楷書)체 또는 행서(行書)체로 흘려 쓴 것으로, 한번 쓴 것을 지우고 고쳐 쓴 흔적 등이 나타나 있다.

자료 ⑤의 필적은 김기설이 승의여전의 총학생회장에 써 준 집회의 일정 메모로서, 볼펜을 사용하여 급히 쓴 것으로 각 문자를 속필로 행서체로 흘려쓰고 3개조(組) 중에서 최초의 2개조를 극단적인 끝올림으로 썼으며 최후의 한 조는 원만한 각도로 쓰고 있다.

자료 ⑥의 필적은 방명록 용의 노트에 볼펜으로 속필을 사용하여

비교적 또박또박한 행서체로 씌어져 있다.

자료 ⑦의 필적은 1989년 9월 25일의 행동을 일지로 쓴 것으로 각 문자를 정성껏 해서체로 쓰고 있다.

자료 ⑧의 필적은 봉투 뒷면에 사인펜으로 5문자를 횡서로 쓰고 있다.

자료 ⑨의 이력서 필적은 해서체를 사용하여 정성껏 씌어져 있다.

김기설이 쓴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횡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하여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로 수직과 좌하방으로 경사하는 두가지의 필법을 혼용하고 있다.

자료 ③과 ④는 강기훈이 옥중에서 쓴 2통의 봉함엽서의 필적과, 1991년 5월 21일 편지지 1장의 앞뒤에 쓴 필적의 두 종류이다.

옥중에서 쓴 편지는 봉투의 소인이 1987년 6월 8일과 동년 5월 7일의 것으로 어느 것이나 괘선이 있는 편지지에 볼펜으로 횡서로 각 문자가 씌여져 있다. 별도로 금년 5월 21일에 괘선이 있는 종이에 볼펜으로 횡서로 쓴 것은 어느 것이나 속필로 정성껏 행서로 씌어져 있다.

3개조의 각 문자의 배자(配字)를 보면, 작성연대와 관계없이 종횡 10㎜의 크기로 크고작음의 흐트러짐이 없으며, 감정물건(鑑定物件)과 같이 말미를 상하로 치우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로 일직선으로 씌어져 있고, 문절간의 간격도 일정한 간격으로 정연하게 되어 있다.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종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를 다용하여 수직과 우하방(右下方)으로 경사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필(縱筆)을 가압하지 않고 삐쳐 내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횡선에서는 기필(起筆)시에 가압하여 삐치는 필법을 다용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필적 중에서 특히 고유필법(固有筆法)을 사용하여 항상성(恒常性)을 나타내는 개성표현(個性表現)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하의 점을 들 수 있다.

1) 「사선(斜線)」의 필법에 관하여

각 문자의 최초의 제일획(制一劃)의 짧은 사선의 필법을 기본적으

로 「하」 「하」 「하」 「하」 「하」 와 같이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사선을 직선·곡선적 필치로 길고 짧게 쓰며, 여기에 필압의 가감이 작용하여 매우 변화된 필법을 사용하여 개성표현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개성표현의 필법의 구별을 찾아내는 것이 감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설이 쓴 자료 ②의 4장 중에서 사선의 필법을 「하」와 같이 기필을 가압하여 그대로의 필압을 유지한 채 우하방으로 짧게 내려 긋는 필법이 44개조 중 34조에 나타난다. 반대로 「형」과 같이 우측에서 좌하방으로 동일 필압의 사선으로 내리는 필법이 44개조 중 10개로 나타나 있어, 양자의 필법을 혼용하고 있다. 자료 ⑤에서는 우하방으로 사선을 내려긋는 필법을 7개조 중 5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사선을 내려쓰는 필법도 2개조를 포함하여 쓰고 있다. 자료 ⑥에서는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이 5개조의 사선 중 1개조가 있을 뿐으로 나머지 4개조를 「형」와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을 쓰고 있다. 자료 ⑨에서는 각 문자의 수가 비교적 적으며, 우하방으로 사선으로 내려긋는 필법을 3개조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기설이 쓴 68개조의 사선 중에서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이 52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사선의 필법이 16개조나 되어 양자의 필법을 혼용하여 쓰는 고유필벽(古有筆癖)이 확인된다.

자료 ③의 강기훈이 쓴 2통의 편지 중에서 전자(前者)에는 봉투를 포함하여 36개조, 후자는 봉투를 포함하여 40개조, 자료 ④에는 88개조의 사선이 있다. 도합 167개조의 사선의 필법을 「혼」과 같이 우하방을 향하여 기필에서 가압한 후 삐쳐내리는 필법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술한 김기설의 사선의 필법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감정물건의 유언시의 사선의 필법을 보면, 첫째장에 있는 26개조 중에서 「하」와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6개조, 반대로 「형」와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20개조나 된다. 둘째장에서는 16개조 중에서 「하」와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5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11개조에 이른다.

내용이 상이한 2장의 유언서의 사선의 필법을 보면, 42개조 중에서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11개조, 반대의 필법이 31개조로 각기 흔

용되고 있으며 자료에 든 김기설의 사선의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다. 강기훈의 사선의 필법과는 명확히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2) 「ㄹ」의 필법에 관하여

자료의 문자 중에서 「일」 등의 받침 「ㄹ」의 필법을 보면, 김기설이 쓴 ②에는 14개조, ⑤에는 4개조, ⑥에 3개조, ⑦ 에 1개조, ⑨에 4개조 등 합계 26개조가 있으며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여 제1, 2, 3획을 한 획으로 단번에 쓰며 제3획을 끝올림의 횡선으로 삐쳐 올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강기훈이 쓴 받침 「ㄹ」은 ③에 58개조, ④에 84개조가 있으나 모두가 「ㄹ」 「ㄹ」와 같이 제2획의 횡선을 가필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감정물건인 유언서의 「ㄹ」문자의 필법을 보면, 첫째장에 20개조, 둘째장에 14개조가 있는데,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고 단숨에 쓰고 있어 김기설의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법과는 상이함이 확인된다.

3) 「ㅏ」와 「ㅑ」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ㅏ」 「ㅑ」의 각 문자의 횡선의 필법을 보면, ②에 40개조, ⑤에 14개조, ⑥에 10개조, ⑦에 5개조, 마지막의 봉투 겉면의 ⑧에 3개조, ⑨에 14개조 등 도합 86개조가 있다. 이것들의 제 2, 3획의 횡선의 필법을 보면, 수정으로 긋는 필법을 다용하고 있고 그 밖에 끝부분을 밑으로 향하여 내려긋는 필법도 병용하여 종필을 가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기훈이 쓴 ③과 ④의 「ㅏ」 「ㅑ」 문자는 전부 297개조이다. 그 중에서 제 2, 3획의 필법을 보면 끝올림의 필법을 사용하여 종필을 삐쳐 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언서 2장 중에는 「ㅏ」 「ㅑ」의 문자는 도합 83조가 있다. 제 2, 3획의 필법을 보면 「ㅏ」 「ㅑ」와 같이 수정 혹은 끝내림의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을 짓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김기설의

필법의 특색과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법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4) 「ㅁ」 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문자 중의 「맘」과 같이 「ㅁ」부분의 필법을 보면, 「ㅁ」과 같이 제 2획을 굽혀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을 짓는 필법과, 「ㅁ」과 같이 제 2획의 종필에서 부터 전중(轉重: 펜을 떼지 않고 겹쳐서 다음을 쓰기 시작하는 것)하여 제 3획으로 이행하는 두가지의 필법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분류하여 보면, 자료 ②에서는 「ㅁ」부분의 필법 18개조 중에서 「ㅁ」과 같이 쓴 것이 12개조, 「ㅁ」과 같이 전중하는 필법이 6개조로 나뉘어져 있다. 자료 ⑤에서는 2개조 중 각 1개조로 나뉘어 진다. 자료 ⑥에서는 5개조 중에서 「ㅁ」가 1개조 「ㅁ」가 4개조로 나뉘어 진다. 자료 ⑦에서는 2개조 중 각 1개조로 나뉘어 진다. 자료⑨의 이력서에서는 해서체의 또박또박한 필치로 5개조 중 4개조를 「ㅁ」과 같이 쓰고 있으며, 마지막 1개조를 「ㅁ」과 같이 행서체로 바꾸어 쓰고 있다. 김기설이 쓴 32개조의 「ㅁ」부분을 보면, 이력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4개조를 해서체로 「ㅁ」과 같이 쓴 것과, 「ㅁ」과 같이 제 2획의 종필을 끝매듭짓고 있는 것이 15개조, 전중하는 필법이 13개조 있으며, 제 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 짓는 필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강기훈이 쓴 ③에서는 「ㅁ」부분이 81개조가 있는데, 「ㅁ」과 같이 제 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짓는 것이 30개조, 제 2획의 종필을 전중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51개조이다. ④에서는 전부 60개조 있는데 제 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짓고 있는 것이 16개조, 제 2획의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44개조나 된다. 이를 합계하면 제 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짓는 것이 46개조,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96개조로 후자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어 김기설이 쓴 필법과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증명된다.

감정물건인 유언서의 「ㅁ」부분의 종필의 형태를 보면, 첫째와 둘째

장에 나오는 42개조 중에서 종필을 가압한 것이 32개조,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10개조 이어서 자료의 김기설이 쓴 종필과 필법의 비율이 합치하며 강기훈의 종필의 필법의 비율과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5) 「ㅂ」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ㅂ」의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2에 18개조, 5에 5개조, ⑥에 2개조, ⑦에 4개조 ⑨에 10개조 등 합계 39개조이다. 이들 모두가 제 1, 2획의 종선을 평행이 아니라 곡선적 필치로 안쪽으로 굽혀서 내려긋고 제 2획의 종필에서 제 3, 4획을 연속필기(連續筆記)로서 「ㅂ」과 같이 쓰며, 종필을 제 2획의 종선보다 우외측(右外側)으로 돌출되도록 삐쳐 올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서는 본인이 직접 썼다"

—인권위가 CCA에 의뢰, 일본인 필적감정인으로 부터 밝혀져—

▲김기설씨와 강기훈씨의 필적.
김기설씨(1, 5, 6, 7) 필적의 'ㄹ'은 받침전체를 한 획으로 단번에 쓰는 반면 강기훈씨(3, 4)는 'ㄹ'받침의 두번째 획에서 가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장 부 록

1. 시국 사건과 검찰 수사
2. 드레퓌스 사건

부록 1.

『시국사건』과 『검찰수사』

이 자료는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에서 매월 발행하는 『정세연구 6월호 통 권 22호」 권말부록에 실린 『정치검찰, 그 행적과 실상』 중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거름, 1987.
유가협·제열사추모사업회, 『살아서 만나리라』, 1990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인권백서』, 199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통일운동과 민중인권』, 1989.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말』, 1986.7
황호택, 「부천서 사건 시비의 시말」, 『신동아』, 1986.9
김차웅, 「박종철 사건 축소조작의 전말」, 『신동아』, 1987.7
전만길, 「박종철군 고문치사에서 추도집회까지」, 『신동아』, 1987.3
이상수, 「고문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신동아』, 1987.7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이철규군 변사사건에 대한 의문과 검증」, 1989.
고박창수위원장 사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 「기자회견문」1991.5.31.

1. 검찰의 수사방식

'시국사건'과 검찰의 정치적 활용

소위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그 어느 범죄에 비해 강경하다는 것은 수 많은 사건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살펴 본 '권력비리사건'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는 명백히 대조적이라 할 것이다.

어쩌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현재의 법구조와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경우,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기본권마저도 공공연히 침해당하는 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마찬가지로 '인권의 침해자', '정권 안정의 파수병'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데올로기적 상황 또한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보수적(또는 파쇼적)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만큼 소위 '체제 수호'의 최첨단에 서있는 검찰이 보수적이고 냉전적인 정치적 태도를 사전적으로 지니게 되리라는 점 역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견 검찰은 그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단지 객관적 위치와 구조에 의하여 정권 수호에 앞장서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활동사를 볼 때, 단순히 객관적인 사회적 상황에 의해 검찰의 행위가 모두 합리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건의 정치적 활용'에 검찰이 주동적으로 나선 많은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검찰이 특정한 사건, 주로 '시국사건'이나 '야당관련 사건' 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주지의 사실로 되어있다. 가령 정세가 정권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민주세력이 성장하는 시기에 큼지막한 조직사건이 발생했음은 3공화국 이래 한국 사회의 전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의 행보를 제약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에 대한 내사가 공표되는 것 역시 드믄 일은 아니다. 더욱이 그 결과로서 중대한 합의, 소위 그들이 말하는 '타협의 정신'이 발휘된 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처럼 정치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

는 데 촛점이 가있다. 이 중에는 명백한 조작극도 있으며 조작이 아닐지라도 정치적 효과를 고려해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 과거 5공의 경우, 수많은 조직사건들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인 구금 수사'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텔레비젼을 통해 '그림표'가 발표되는 것은 항상 '가장 적절한' 시기가 선택되어졌다. 예를 들어 '학원 안정법 제정'을 강행하려던 시기, 국민들의 '개헌요구'가 분출하던 시기 등이 이들이 즐겨 사건을 활용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정세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사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검찰은 이러한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다.

'확대'와 '축소'의 수사방식

검찰은 '시국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건의 발표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방법 외에 '사건자체를 유리하게 재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전형적 방법 중의 하나가 '사건의 확대 포장'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결합되는데 그 중 하나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사전에 흘림으로서 여론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재판 과정에 와서는 여론에 흘렸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기소되지 않는다. 이것은 언론이나 대중이 검찰의 '사건 발표'나 '중간 수사발표' 등에는 대서특필하고 관심을 갖지만 정작 재판 과정에 대하여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그들의 기술인 것이다. 사실 검찰이 증거도 불확실한 추정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죄가 인정되기까지 그는 그 죄에 대해서 무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종결까지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는 무죄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하물며 기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추정 사안까지도 언론에 발표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인권유린'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쓰는 다양한 방법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정권의 의도에 따라 일단 되든 안되든 기소를 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86년의 '건대사건'을 들 수 있다. 1천2백여명이라는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의 구속자를 낸 건대 사건은 막상 재판 과정에서는 대부분 구속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다.

이렇듯 검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국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시국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수사과정에서 많은 무리수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런 무리수에 의해 빚어진 사건들이 '성고문 사건' '고문치사사건' 기타 '의문사 사건' 등인 것이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조직사건에서 최대로 그림표를 확대하기 위해 발휘하던 놀라운 '확대지향적 창조성'(?)은 어느 새 사라지고 사건담당 수사관의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축소지향성'이 두드러진다. 여론을 의식해 청와대나 검찰은 의례적으로 '유감이다'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는 등의 말만하고 실제로는 '고문'과 같은 불법행위는 수사관 개인에 의해 단독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의미를 축소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리하여 역대정권하에서 큼직한 사건치고 지금껏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진상이 시원스럽게 밝혀진 적이 없다. 사건의 주체인 검찰은 때때로 '과학적인 수사', '국가의 명예를 건 수사'라는 이름하에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시국사건을 접할 때마다 상식밖의 검찰 주장에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느껴왔고, '혹시'하다가 '역시'하는 결과를 보고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시국사건'과 관련해 엿가락 주무르듯 늘렸다, 줄였다 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검찰의 수사방식은 객관적 위치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할 수 있으며 능동적으로 '정권수호의 첨병'으로 스스로 자처하며 나서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시국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를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검찰수사의 사례

'부천서 성고문 사건'

①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학생출신 해고근로자인 권인숙 양(서울대 의류학과 4년 제

적)이 86년 7월 3일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 인천지검에 고소함으로써 시작됐다.

7월 5일 권양의 변호인단 9명이 인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권양은 지난 6월 6일 새벽 부천경찰서 조사실에서 2시간반 동안 성고문을 당했다. 문경장은 "인천사태 관련 수배자 중에서 아는 사람을 불어라"고 강요했으나 권양이 "모른다"고 하자 "이년 안되겠군. 나는 5.3인천사태 때 여자만 다뤘다. 그때 들어온 년들도 모두 옷을 발가벗겨서 책상위에 올려놓으니 자백하더라"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 문경장은 다른 형사 1명과 함께 권양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어내리며 "너 처녀냐? 자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브래지어를 들추며 "처녀가슴 같지 않다"는 등의 더러운 수작을 했다. 6월 7일 밤에는 문경장이 혼자 불꺼진 조사실에서 2시간동안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추행을 하며 ...."[2]

권양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자 문경장은 이를 터무니 없는 조작극이라며 7월 4일 권양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데 이어 5일에는 권양을 무고혐의로 추가고소했다. 특히 검찰과 공안당국은 권양의 주장을 '성을 도구화하는 운동권의 상습적인 허위선전'이라고 비방하고 나섰다.

이후 이 사건은 '누가 성을 도구화했나'하는 문제를 놓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3년간의 지리한 법정 논란을 빚게 되었다.

② 검찰의 태도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은 7월 16일 "문경장이 권양의 재킷을 벗게 한 후 셔츠를 입은 가슴부위를 쥐어박은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 모욕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권양 변호인단은 7월 18일 「검찰발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심 끝에 찾아낸 진실을 발표과정에서는 허겁지겁 왜곡하고 은폐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알리바이까지 조작해가며 허위주장을 내세우고 '욕이라도 한마디 했더라면 억울하지나 않겠다'며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하다가 관계증거

2) 「동아연감」, 1986년, 156쪽

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폭언 폭행만을 자백하기에 이른 문귀동의 진술 내용과, 수치심과 굴욕감 때문에 오랜 망설임 끝에 피해사실을 호소한 스물 세살 미혼처녀의 주장 중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하고 반문했다.[3] 그러나 검찰은 끝내 문경장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고 옥봉환 부천경찰서장 등 관련경찰관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문경장의 알리바이 조작사실이 드러난 상태이므로, '성폭행은 없었다'고 하는 검찰발표의 배경에 외부세력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무성했다. 검찰은 당초 문경장을 구속할 방침이었다가 갑자기 기소유예 방침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66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에 반발하여 몇차례에 걸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번번이 기각당하다가 10월 31일 서울고법이 권양이 주장한 성모욕행위 대부분을 인정함으로써 검찰발표가 사건을 축소 조작했음이 입증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권양이 어느 정도의 가혹행위를 받았는가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성고문'이라는 끔직한 용어 자체가 인간성의 상실을 더없이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우리가 인간의 도덕성을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태도이다.

"권양의 성모욕 주장은 운동권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는 의식화 투쟁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구명은 물론 수사기관의 권위를 실추시켜 정부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급진세력들은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4]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던 다음날인 7월 17일 일간지에 일제히 실린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글은 다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만일 공안당국의 분석대로라면 권양은 백번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고, 반대로 권양의 성

3) 「검찰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민주화실천가족 협의회, 『나의 손발을 묶는다해도』, 거름, 1987
4) 동아일보, 1986.7.17.

고문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물론 정권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태도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이었으며 너무나도 '상식 밖'이었다.

이후 사법부에 의해 문귀동 경장의 성모욕행위가 인정되고 공안당국의 '성을 도구화한다'는 주장이 왜곡날조되었음이 밝혀졌는데도, 가해자인 검찰과 공안당국은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당시 검찰발표가 오히려 권양을 수치감에서 보호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태도를 보였다.

③ 문제점

천인공노할 '성고문'이 사실로 드러난 이 사건은 공안통치속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했던 김근태 씨의 경우와 비견되면서도 5공화국의 부도덕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박종철 군 사건에서처럼 정권차원의 은폐조작은 밝혀지지 않아 검찰과 사법부의 한계를 다시금 실감케했다. 특히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이 문경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가 전두환 씨에 의해 최종 결정됐다고 진술하는 등 정권 수뇌의 은폐조작기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이를 끝내 부인한 것은 정권유지를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5공화국에서 시작하여 6공화국에 들어와 그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고문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권력의 최고책임자가 한번도'성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점에 미루어보더라도 보다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된다.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

① 사건 개요

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시국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언어학과 4년)이 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 치안본부측은 수사관들이 책상을 '탁'치자 박군이 '억'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고 발표했다.

단순쇼크사로 끝날 뻔 했던 이 사건은 양심적인 의사와 언론의 추적으로 가혹한 고문에 의한 죽음임이 드러나 고문경찰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가 구속됐다. 그러나 사건발생 4개월만에 박군 고문에 황정웅 경위, 반금곤 경장, 이정호 경장 등 3명이 가담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발표로 사건이 축소,조작되었음이 밝혀져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아어 언론보도로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치안감, 대공수사 과장 유정방 경정, 대공수사 계장 박원택 경정 등 대공간부 3명이 사건축소조작을 모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져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분출하는 민주화 요구에 기름을 부어 87년 6월 대항쟁으로 나아가 5공화국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후 박군 사건은 이에 그치지 않고 88년 1월에 접어들어 박군의 사체를 부검했던 황적준 박사가 당시 자신의 일기장을 공개, '강민창 치안본부장 등 치안본부 수뇌들이 처음부터 진상을 은폐조작하기 위해 황박사를 협박,회유해왔음'을 폭로함으로써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로써 박군 사망에 관련된 구속자는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비롯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년간에 걸친 진상규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축소,조작해 온 것으로 알려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치지 못했다.

② 검찰의 태도

사건 직후 검찰이 수사에 나설려고 했으나 갑자기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으로 수사주체가 경찰로 바뀌고 말았다. 경찰이 저지른 일을 경찰이 조사한 결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1월 19일의 발표에서 범인을 2명으로 축소하고 "일부 수사관들의 지나친 집무의욕 때문에 일이 빚어졌다"고 얼버무렸다. 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구속된 고문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비공개수사를 벌였고 현장검증 방침을 돌연 변경, 고문경관 없는 비공개 실황조사만을 한데다 경찰발표와 대동소이한 검찰 수사발표를 해서 뭔가 석연치 않는 모습을 나타냈다.

5월 18일 사제단의 성명이 있자 서울지검은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고 했다가 3일 뒤에는 이를 인정하면서 "축소조작은 단순히 범인 5명끼리만 짜고 한 것으로 이제 더이상의 배후는 없다. 검찰이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5월 초순경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처원 치안감과 대공요원들이 사건축소모의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발표를 한 검찰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또 박치안감 등을 소환,조사해오던 검찰은 5월 25일 이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조경위 등의 진술도 오락가락해 증거를 잡을 수 없다며 박치안감 등을 일단 귀가시켰다. 시중에서는 "박치안감 등이 20,30년간 대공분야에서 일해온 수사베테랑들이라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지검은 진작부터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대공간부들의 축소조작사실을 제대로 캐낼 수 있겠는가"는 등의 말까지 나돌았다.[5]

수사책임은 다시 대검중앙수사부로 넘어갔다. 중수부는 사건인수 이틀만인 5월 29일 사건조작을 위해 박치안감이 조경위 등에게 보여주며 회유한 2억원 통장의 원장을 찾아내고 박치안감 등 3명을 추가 구속했다.

사건발생 1년만에 황적준박사의 증언으로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구속됨으로써 이전까지의 검찰발표는 모두 축소,은폐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나중에 황적준 박사가 일기장을 공개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사건의 은폐조작은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6] 더구나 안상수 변호사는 "그때 권력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주체인 검찰을 '수사의 보조자' 또는 '법무참모'쯤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철저하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한마디로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식이었다. 그리고 사건은폐조작의 '추인'은 항상 권력의 최상층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

---

5) 김차웅, 「박종철군 사건 축소조작의 전말」, 『신동아』, 1987.7.
6) 동아일보, 1988.1.12.

③ 의혹과 문제점

박군사건의 경우,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단순쇼크사가 경찰 수뇌까지 공범이 된 거대한 음모로 밝혀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그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첫째는 전기고문에 대한 의혹이다. 둘째는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 김성기 법무장관 등 권력 핵심부가 은폐조작의 배후였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의문점은 박군 사체에 전기고문의 흔적이 역력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존재가 인정된 상태에서는 사실 의혹이 아니라 '암묵적인 사실'일 것이다.

박군사건에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수사하면서 매번 "이제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모두 파헤쳤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숨겨진 사실이 조금씩 밝혀졌고 검찰은 오히려 언론에 쫓겨다니는 무력함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축소은폐 내용을 적은 일기장을 공개한 황박사에게 "영웅심 때문"이라며 다그친 대검수사부의 태도에서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듯이 검찰에 의한 진실규명은, 권력구조의 본질적 개조없이는 앞으로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산동의대 사건'

① 당시의 정세와 사건의 개요

'부정선거'와 '야권분열'을 통해 집권할 수 있었던 노태우정권은 집권초기에는 '보통사람' '권위주의 청산'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기만적 유화제스처를 취하였다. 그러나 88년 4.26총선을 거치면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5공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국회청문회에 대한 열기와 가두투쟁으로 분출되자, 노정권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파쇼적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권의 대응변화는 89년 들어 소위 '공안정국'을 조성하게 된다.

89년 1월 풍산 금속의 노동투쟁에 대한 탄압에서 시작하여 2월 '여의도 농민집회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색출,구속 지시', 3월 '총기사용지시' 등 소위 '체제수호'의 미명하에 전개된 강력한 '공권력 개입'은 4월 '문목사 방북'과 관련한 전민련에 대한 탄압과 '현대 중공업 투쟁'에 대한 탄압에

서 절정을 이룬다. 이러한 정권의 탄압은 민족민주운동의 전부문으로 확대되었는데, 학생운동의 경우 학내집회에 대한 즉각적 경찰투입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안통치'의 상황속에서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들의 방화로 전경 7명이 사망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동의대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5월 1일에 발생한 파출소 소장의 '칼빈총 난사 사건'이었다. 동의대 근처에 있는 가야3 파출소 소장 김장호는 주택가를 150M 가량을 쫓아가며 학생시위대를 향해 칼빈총을 24발이나 난사하였던 것이다. 김소장의 이러한 행동은 3월의 '파출소 습격에 대한 총기사용지시'라는 정권측의 강경대응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파출소 습격에 대한 방어의 차원을 넘어 주택가를 150M나 쫓아가며 총을 쏘았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적 도발행위나 다름 없었다. 그리하여 5월 2일 경찰의 총기난사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있었는데, 이 날의 경찰 진압작전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공세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백골단이 시위학생들을 체포하는 방법은 극도로 잔인하여 수 명의 학생들이 이를 피하려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을 정도였다. 이렇게 되자 학생들도 매우 흥분하게 되어 전경들과 심한 격투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체포작전을 펴던 사복전경 몇명이 학생들에게 붙잡혀 도서관에 감금되게 되었다. 시위가 끝나고 동의대 학생회장은 감금된 전경들을 다음날 오전에 모두 조건없이 풀어주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서 정보과장은 "이젠 늦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전에 강제해산과 구출작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무리한 구출작전이 감행됨으로써 전경들의 생명만 잃게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동의대 사건'은 정권의 무리한 '공안통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검찰의 태도

'동의대 사건'이 나자 곧 검찰은 김기춘 검찰총장의 명의로 이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들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에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

한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졸지에 학생들은 '사람이 죽게 될지 뻔히 알면서' 방화를 한 살인자들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검·경 합수부는 학생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고려한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떠들고 나섰다. 이들은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일본의 '적군파'처럼 공개적 테러를 행한, 즉 '살의'에 의한 행위라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근 1개월가량을 검,경찰은 학생들을 흉악한 살인자인냥 언론을 통해 여론을 유도하다가, 5월 27일에 이르러서 부산지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부분은 삭제한다고 신문에 조그마한 기사로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방화치사상죄'가 형량이 많음으로 굳이 '살인죄' 항목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9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계속하여 "학원내 극렬학생과 총학생회 간부들이 경쟁적으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납치가 있었고, "경찰에 대해 조직적인 대항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화염병을 던져 방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수긍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였다.

③ 의혹과 문제점

이 사건과 관련해 첫번째 의문은 '화인'의 문제이다. 과연 학생들의 화염병이 화인이었는가 아니면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다른 화인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첫째로 검찰의 발표대로 이미 바닥에 신나와 석유 등이 있었다면 화염병을 던진 사람들은 왜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며 둘째로 바닥에 있던 휴지와 천 조각은 타지 않은 채 남아있고 벽면 허리선 부분에서 천장까지 그을음과 석고보드가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는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다. 화재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지만, 도서관은 9층 건물이었고 학생들은 7~9 층에 집중적으로 있는 조건에서 일체의 구조 장비를 갖지 않고 작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항복 아니면 죽음'을 강요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상사를 고의로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건대사건'이나 '구로 구청사건'에서 나타났던 투신이나 추락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어느 정도의 살인 의사를 내포한 행위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규명 문제는 '동의대사건'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문점들과 함께 검찰의 사건수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검찰은 수사의 초기에 아무런 증거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대중에게 유포되어졌다. 이렇게 학생을 살인자로 모는 여론 재판을 한참 한 후 한달여가 지나자 그들은 조그마한 기사로 '살인죄' 부분은 삭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근 한달 동안 여론을 통해 대중의 정서를 자극한 것은 '동의대사건'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강조된 것은 이제 학생들은 '살인 테러 집단'에 이르렀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검찰은 입증할 수도 없는 '살인죄'라는 항목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데 크게 활용하고는 정작 재판의 단계에서는 살짝 빼버리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검찰은 사건 전에 시위장을 떠난 학생에게까지 사형을 구형하면서도 정작 사망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진압 지휘자들에 대하여는 형식적 수사로 그치는 편파적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진압 지휘자들에 대해서는 전경들조차도 의문을 표시하고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형식적 수사에만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끝으로 '화인'의 문제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들 수 있다. '화인'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화인 감정서'가 필수적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검찰은 '화인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이유로 '화인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명백하다는 화인은 '김영권, 오태봉이 세미나실 복도에 신나를 5말가량 붓고 경찰이 진입하는 순간 윤창호가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발생케 해, 7명의 경찰관이 소사하거나 추락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화염병을 던진 시간과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10여분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과 '15명의 경찰이 화재가 난 7층을 통과하여 8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들은 불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명백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너

무나 이상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화인 감정서'의 제출, 화인 감식반이 촬영한 현장 비데오 테이프의 공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의 제출을 검찰은 끝내 거부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을 볼 때, 검찰이 한 역할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물론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죄를 덮어씌워 정권의 공안통치를 가속화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이철규군 변사사건'

① 사건 개요

89년 5월 10일 광주 제4수원지에서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전자공학 4년)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체는 입가에 피를 흘린 자국과 온몸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얼굴은 검게 변해있었다. 또 오른쪽 눈은 함몰상태였고 왼쪽눈은 튀어나와 있어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이군 사망 당시에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공안합수부가 설치돼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바람이 불었고, 이군은 조선대학보 「민주조선」편집과 관련, 공안합수부에 의해 1계급 특진과 3백만원의 현상수배에 쫓겨다니던 중 죽음을 당했다.

5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체부검 결과 장기에서 프랑크톤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이군의 사인을 익사로 단정했다. 이어 5월 30일 광주지검은 "이군은 경찰의 검문을 받고 도주하다가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수사를 종결지었다.

그러나 사체의 상태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실족익사'라는 검찰의 발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고 이군 '대책위'에서는 "이군이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가 숨진 뒤 저수지에 버려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숱한 의혹을 남긴 채, 89년 11월 4일 이군의 장례식이 치뤄진 이후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② 검찰의 태도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은 사건 직후 수사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최근 용공좌경세력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이군을 조종한 불순분자가 배후를 은폐할 목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이 방면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7]

"좌경혁명세력의 잔혹성으로 미루어 볼 때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일 수도 있다"[8]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극우파 개인에 의한 타살, 시국전환을 꾀하기 위한 불순분자에 의한 타살, 학내 내부간의 알력에 의한 타살, 자살 또는 도강중 사고사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9]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한다"는 적반하장격인 공안당국의 분석을 그대로 답습한 느낌을 준다. 그러다 국립과학연구소의 부검결과가 '익사에 의한 사망'으로 발표되자 검찰의 수사방향은 '실족 가능성'에 맞추어졌다.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22명 등 대규모 수사반을 편성, 20일 동안 참고인 120명에 대해 215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및 8차례에 걸친 실황조사를 펼쳤으나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에 바탕을 둔 '추정'일 뿐이었다. 이러한 검찰수사에 대해 '범국민위원회'는 「진상보고서」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다음은 그 중 일부분이다.

"본 위원회가 시민의 제보를 근거로 '입었던 겉옷이 어디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 사파리 점퍼가 나타나고, 검문한 차량이 있었다고 지적하면 검문사실을 비로소 인정하는 등의 맞춤수사가 과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검찰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실족익사로 단정한 근거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철규 군이 수원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수원지 청원경찰 홍성하 씨가 들었다는 소리는 수사과정에 따라 "입에 물이 잠긴 상태로 '아흐아흐'하는 비명소리"에서 "갑자기 첨벙하는 물소리와 더불어 '으악'하는 소리"로, 다시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고 악, 악, 악 하는 소리"로 변했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소리"로 변해 검찰의 유도대로 바뀌었다."[10]

이와 같이 검찰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6공화국하에 '정치적인 의문사'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부담하에 미리 실족사를 단정해 놓고 이를 합리화한 인상이 짙다.

검찰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검찰과 문공부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있던 6월 6일 '조선대생 이철규 군 실족익사 사건 전모'라는 소책자 30만부를 제작, 배포하여 항간에 퍼져있는 의문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 "유언비어와 억지"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선전도 수사당국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검찰은 또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사체 재부검에 대해 이를 계속 묵살함으로써 더욱 국민들의 의혹을 자아내었다. 89년 6월 검찰의 재부검 거부방침에 따라 유족 및 대책위는 미국의 칼쉬너 박사를 초청 자체부검하려 했으나 검찰에 의해 거부당했고 89년 10월에는 미국 인권의사회가 이철규 군의 죽음에 의문이 많다며 한국 정부에 재부검실시와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함으로써 검찰이 사인규명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진상을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11]

③ 의혹과 문제점

의문사란 말 그대로 시간과 경위, 동기들이 불명확해서 타살임이 심증, 물증으로 확실한 데도 사인을 밝히지 못하는 죽음을 말한다. 이런 경우 공권력에 의해 은폐, 조작, 축소되기가 쉽다. 5공화국하에 35건에 달하는 의문

7) 조선일보, 1989.5.10.
8) 중앙일보, 1989.5.11.
9) 조선일보, 1989.5.12.

10) 「이철규열사 고문살인 2차보고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통일운동과 민중인권』, 1989.
11) 한겨레신문, 1989.10.21.

사가 발생, 모두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6공화국 최대의 의문사로 꼽을 수 있는 이철규군 사건도 어떤 결정적인 상황변화 없이는 영구히 미궁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철규군 사인규명 대책위'는 그동안 증거수집에 나서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국정조사위에 제출하는 등 사인규명에 노력해왔으나 수사당국의 태도는 너무나 진지하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 제4수원지 근처에는 미국의 미사일기지가 있었다. 더구나 사건발생 이틀만에 미국무성은 "개탄스럽고 잔학한 행위이며 살인범을 체포해 엄벌하기를 기대한다"는 극히 이례적인 논평을 함으로써 미국이 이군 변사사건에 모종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던져주었다.[12]

이철규군 변사사건은 6공화국의 공안통치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발생, 검찰에 의한 일방적인 수사종결로 그 의문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몇 개월 뒤에 발생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장 이내창 군의 의문사도 마찬가지로 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었다.

'박창수씨 의문사'

① 사건 개요

91년 5월 6일 새벽 4시 45분경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가 안양병원 앞마당에서 의문의 시체로 발견되었다.

박씨는 91년 2월 의정부에서 열린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간부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5월 4일 오전 10시께 구치소안에서 머리가 6㎝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 2층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사체 발견 당시 박씨는 환자복 차림으로 있었고 항문과 발 뒤꿈치에 피가 조금 묻어있었으나 머리 등 다른 신체부위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고 손과 발을 양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대자로 누워있었다고 알려졌다.

박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을 받은 가족과 동료들은 박씨가 자살했을

12) 「이철규열사 고문살인 2차보고서」

리가 없다며 사인을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5월 10일 "박씨가 구치소 생활에 대한 염증과 노조활동에 회의를 느껴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고 박창수 위원장 사인규명 진상조사단'(위원장:권영길)은 5월 31일 "안기부 부산 노사조정관 홍성태라는 인물은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국장 장세군 씨를 포섭하여 노조활동에 개입하면서 전노협-연대회의 탈퇴공작을 계속해왔으며 박위원장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당일까지 안양병원에 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 박씨가 누군가에 의해 타살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그러자 검찰은 6월 1일 "안기부 홍상태 씨는 박씨가 숨지기 전날인 지난 5일 안양병원에 2차례 전화를 걸었고 숨진 6일 오후 상경해 노조사무장 장세군 씨를 한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진상조사단의 주장을 부인했고 "안기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를 않겠다"며 수사를 종결지으려 했다. 그러나 박씨의 가족과 동료노동자 그리고 재야인사들은 그동안 안기부의 공작이 계속되었고 노조사무국장 장세군 씨가 행방이 묘연한 점 등 수십가지의 의문을 갖고 계속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② 검찰의 태도와 의혹점

박창수 씨의 죽음은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투신 자살'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다. 즉 구치소에서 박씨와 같은 방에 있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정체라든가, 박씨가 구치소로 면회 온 가족과 동료에게 "나가면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왔던 점과 유서도 없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7층에서 떨어진 사람같지 않게 몸에 외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점은 바로 검찰이 보여준 태도이다. 첫째, 검찰은 박씨가 사망한 다음날 가족과의 약속을 깨고 영안실 벽을 부숴 1천명의 병력을 투입, 가족들을 격리시킨 채 박씨의 시신을 강제부검했다. 최소한의 현장보존도 없이 검찰이 서둘러 시신을 옮기려 했던 점은 상식밖의 처사로서 뭔가 뒤가 구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당시 김기설 씨 분신자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배후'를 캔다며 집요하게 물

고늘어지는 열의를 보였는데 박창수 씨의 사인규명에는 시종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아주 상반된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사건에 따라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 움직인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셋째, 구치소에서 박위원장이 부상당한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검찰은 처음에 "혼자서 공놀이를 하다 다쳤다"고 하다가 뒤에 가서는 "운동을 마친 후 자해했다"고 밝혀 일관성없이 갈팡질팡했다. 넷째, 검찰이 안기부 홍성태 씨를 단 한번 불러 진술을 듣고 이를 근거로 진상조사단에서 주장하는 '안기부 개입설'을 사실무근인 것으로 일축했다는 점도 진실을 성의 있게 가려야 할 검찰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다섯째,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병원측 그리고 구치소측은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장사진, 면회자·수감자 기록카드 등 조사단에서 요구하는 자료제공과 조사협조 요구를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검찰이 사인을 규명하는 데 떳떳하지 못한 점 등이다.

이 사건도 이철규 군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의문사와 마찬가지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무엇보다도 박창수 씨가 노동운동에 앞장서왔던 지도급 인물이었고,. 정치공작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안기부가 박창수 씨의 활동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회유·협박해왔다는 상황배경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검찰이 진상조사에 소극적이라는 것도 석연치않은 점이다. 이와 같은 수사당국의 태도는 곧이어 발생한 성균관대생 김귀정 양 사망사건에서도 '늦장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창수 씨의 의문사는 검찰이 이전의 어떤 사건보다도 강경한 자세로 대처한 점이 특징이다. 사체가 발견된 지 불과 몇시간만에 시신을 옮기고 강제부검을 실시, 서둘러 사건수사를 종결짓는 한편, 현장을 보전하면서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던 점 등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기보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검찰의 '조기수습'을 위한 강경자세는 6공화국하에 발생한 대부분의 의문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건의 성격면에서는 이철규 군 사건 이후로 '우발적인' 죽음이라기보다 '의도된' 죽음이라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

3. 정치권력과 검찰

정권의 변화 없이 검찰의 변화는 없다!

우리나라 검찰은 5공이나 6공을 막론하고 앞서의 '권력비리사건'과 '시국사건'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극단적으로 말해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나 '정권유지의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조직인 이상에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따져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고 이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할 때 국민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종의 직업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정권의 의도에 따라 축소하거나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허기야 이런 원칙적인 얘기는 검찰이 더욱 잘 알 것이다.

'시국사건'에 대해서는 정도 이상(?)으로 철저히 수사하는 검찰이 '권력비리사건'이나 '고문,의문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숱한 의혹을 덮어둔 채, 얼렁뚱땅 여론무마식으로 하는 이유는 '법의 형평'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일차적인 원인은 정권 자체에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역대 정권들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데 소위 '법'을 이용하는 반면 자신들은 일종의 '법외'적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군림하여왔다. 그리하여 자신의 반대자에 대해 법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검사(?)나 자신의 영역까지 수사를 하려는 건방진 검사(?)는 일찍이 제거되거나 승진의 기회를 박탈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외압이 오늘의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일차적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반민주성, 반민중성이 남아 있는 한 검찰의 개선이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검찰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의 여러가지 예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검찰은 사실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마지못해 반민중적 태도를 취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이미 그들은 권력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면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민중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중립성'이란 공허한 소리가 될 것이다.

이미 정치적 외압에 길들은 검찰은 이제 스스로 숙련된 조교처럼 정권의 의도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지게 되고, 최근의 '국가보안법 개정반대서명'이나 '김기설 씨의 유서대필공방'에서 처럼 소위 '언론플레이'도 능란하게 하기에 이른다. 이제 얼마만큼 정권의 의도대로 사건을 잘 처리하는가가 자신의 출세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검찰은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마도 이철희-장영자 사건 당시 검찰차장이었다가 지금은 안기부장이 된 서동권 씨나 당시 중앙수사부장이었다가 전직 법무부장관을 지낸 이종남 씨의 경우가 검사들이 선망하는 출세의 길이 아닌가 싶다.

검찰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정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검찰의 민중억압적 성격이 변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권이 검찰을 지배의 도구로 삼기 위해 강제하고 있는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해본다.

첫째,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통제밖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활동영역에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일례로 검사장에 대한 주민선거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나 직무감독권 등이 폐지 또는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청와대나 안기부 등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강제하는 상명하복의 의무와 직급정년제 또한 철폐되어야 한다. 1986년 검찰청법의 전면 개정 당시에 도입된 상명하복의무와 직급정년제는 검사의 신분보장과

공정한 활동과 전면 배치된다. 검사동일체의 원리에 입각한 상명하복의 의무규정은 검찰조직을 군대조직처럼 바꾸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국민적 요구와는 병행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관료화, 보수화를 극복하고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사회관에 따라 공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의무와 직급정년제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 외에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실체주의 원칙'을 수정하고 '적정절차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사법적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기타 여러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개선책을 무수히 열거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기에 기본적 수준의 언급에서 그치도록 한다. 끝으로 정치권력의 성격 변화 없이 검찰의 근본적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맺도록 한다.□

부록 2

드레퓌스사건

진실의 승리와 더불어 영원한 이름

알프레드 드레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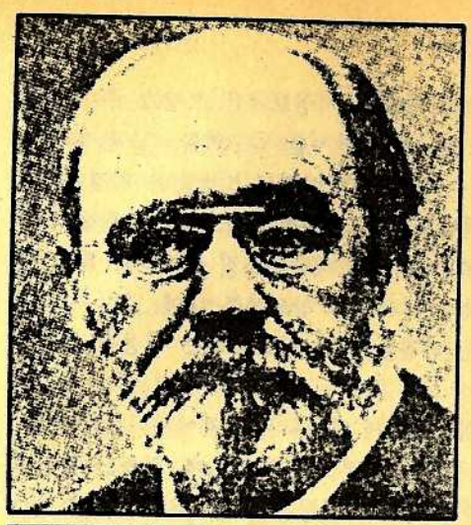

◀에밀 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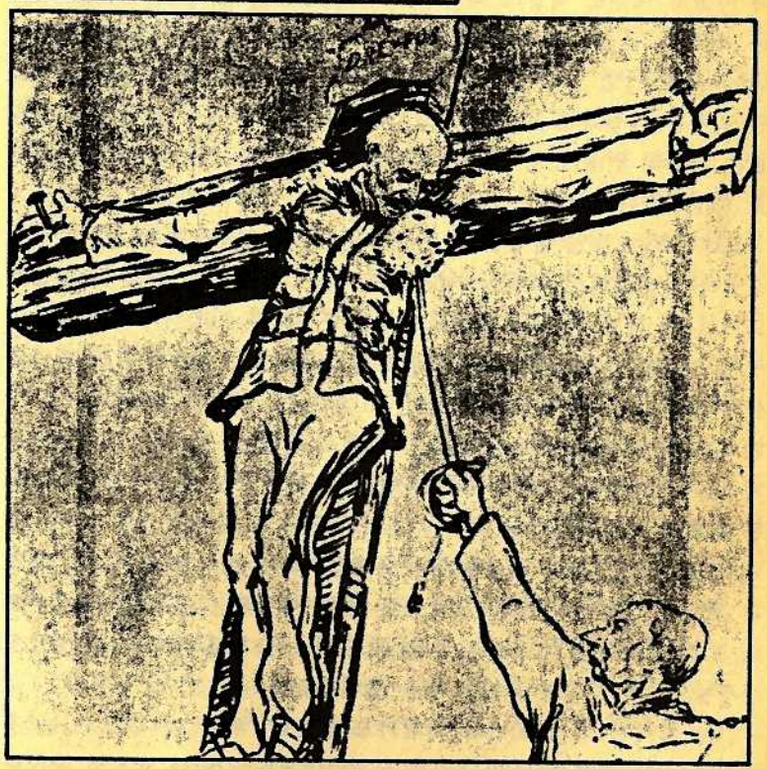

▼드레퓌스에게 불리한 증거를 강요하는 전쟁성장관이 식초에 적신 스폰지를 제공하고 있다

1894년 9월 어느날, 프랑스의 참모본부 정보국은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의 우편함에서 훔쳐낸 한 장의 편지를 입수했다. 그 편지의 수취인은 독일 대사관 무관인 슈바르츠코펜이었고 발신인은 익명이었으며, 내용물은 프랑스 육군 기밀문서의 '명세서'였다. 스파이 활동의 거점인 독일 대사관을 감시하고 배반자를 색출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참무본부는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참모본부 내에 있는 자이거나, 최소한 그런 자와 가까운 연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수사를 시작했다.

시민혁명의 대명사인 '프랑스대혁명'의 나라, 인류에게 '자유·평등·우애'의 정신을 가져다준 민주주의의 본고장 프랑스에, 엄청난 불명예와 아울러 내전을 방불케 하는 사회적 갈등을 휘몰아온 드레퓌스사건은 이처럼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알프레드 드레퓌스(Alfred Dreyfus)라는 한 평범한 유태인 장교에 대한 부당한 박해로써 프랑스인 전체를 대립하는 두 진영으로 분열시킨 후 마침내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과 양심이 거짓과 음모를 굴복시키는 거대한 드라마로 종결되었다.

드레퓌스는 독일 국경 가까운 알사스 지방 밀조우에서 방직공장을 경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가 11살 되던 1870년,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비참하게 패배함으로써 알사스는 독일 영토로 병합되고 말았다. 이때 그는 정치가 개인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며, 또 때로는 불의가 정의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가족들도 기꺼이 그의 뜻에 찬동했다. 드레퓌스는 말수가 적고 성실한 타입의 인간이었지만 약간은 재미가 없고 고지식한 성격이기도 했다. 그는 학교생활과 군생활에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차별과 모욕을 당했지만 조국 프랑스에 대한 사랑과 군에 대한 충성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마침내 프랑스군 참모본부의 수습참모로 등용됨으로써 착실히 군인의 길을 밟아나갔다.

그는 31세가 된 1890년에 대위가 되었으며 '루시 아다마르'라는 유태인 여성과 결혼했다. 가냘프고 온순하면서도 강인한 성격의 루시는

고지식한 드레퓌스를 매우 편하게 해주는 정숙한 아내였으며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았다. 이렇듯 드레퓌스 일가는 매우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프랑스군 참모본부가 이 평온한 가정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말았다. 참모본부의 상관들은 문제의 '명세서'의 필적이 드레퓌스의 것과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스파이로 지목해버린 것이다. 물론 이같은 판단에는 그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유태인에 대한 법률적 차별대우를 폐지한 나라였지만 반유태주의자들은 사회 각계각층 속에 뿌리깊게 존재했고, 특히 군부와 같은 보수집단 안에 득시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명세서'의 필적은 드레퓌스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자 평소 공공연하게 반유태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신문들이 이 사건을 터뜨렸다. 참모본부의 장교가 반역죄를 범하여 체포된 사건을 공개하라고 들고나선 것이다. 드레퓌스에 대한 온갖 날조된 혐의와 근거없는 추측, 그가 했다는 스파이 행위에 대한 터무니없이 과장된 소문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다. 만일 드레퓌스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참모본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형국이었다. 마침내 드레퓌스는 1894년 12월, 군사법정의 비밀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참모본부의 상관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데 혈안이 되어 여러가지 문서를 날조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다음, 그가 그것에 대해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렸기 때문이다. 반유태주의 신문들은 "드레퓌스는 프랑스 국민을 파멸시키고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려는 국제적 유태인 조직의 스파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사형을 요구했다. 참모본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역죄인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간단한 설명으로 확실한 증거의 공개를 요청한 일부 양식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그래도 수긍하지 않는 변호사들에게는 "이것은 중대한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만일 공개할 경우 독일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엄청난 거짓말로 협박했다. 아뭏든 드레퓌스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고 수많은 군중이 보는 가운데 불명예 퇴역식을 치르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1895년 2월 21일 밤, 드레퓌스는 아무도 모르게 아프리카 기아나의 적도 해안에 있는 '악마도'라는 외딴 섬으로 끌려갔다. 그는 사람 키의 두 배나 되는 높은 담장이 두 겹으로 둘러싼 조그만 돌감방에 혼자 수감되었는데 스물네 시간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요, 밤에는 두 발에 두 겹의 족쇄까지 채워져야 했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이토록 비인간적인 감금상태에서 그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자살의 유혹과 싸웠다. 아내 루시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믿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위안이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임이 자랑스러워요…… 이 무서운 불운이 우리를 덮치기까지 우리가 누렸던 그 완전하고 깨끗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행복했던 생활을 되찾으려면 이 무서운 수수께끼를 푸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겠지요. ……나는 믿어요.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드레퓌스 역시 체념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답장을 썼다.

어떤 악마가 정직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과 불명예를 던져넣었을까? ……그러나 나는 체념하지 않았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마는 법이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오. 나는 온세상을 향해서 내 결백을 외치고 싶소.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 피의 마지막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날마다 외칠 것이오. 나는 무죄라고!

그의 호소는 절실했지만 무심한 세상 사람들은 드레퓌스를 잊어버렸다. 나중에는 가족과의 편지왕래마저 금지되었다. 아내 루시와 형 마띠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함께 유배지에서 살게 해

달라는 루시의 청원도 기각되었다. 그는 1899년 6월, 재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이 악마도의 형무소에 갇혀서 보내야 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사이에 드레퓌스사건은 프랑스 전체, 나아가 전세계를 경악케 한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이 끝난 지 15개월이 흘러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이 드레퓌스라는 이름조차 잊어버린 1896년 3월, 참모본부 정보국의 조르쥬 뻬까르 중령이 또다른 스파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레퓌스 사건의 서류철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드레퓌스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문제의 '명세서'의 필적이 보병 대대장인 에스떼라지 소령의 필적과 똑같다는 사실이었다. 뻬까르 중령은 드레퓌스와 군사전술학교 동창생으로서 정의감과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영민한 장교였다. 그는 이 엄청난 진상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에스떼라지를 체포하고 드레퓌스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다. 그의 상관들은 자신과 참모본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드레퓌스사건을 그대로 묻어두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칭찬 대신 질책을 받았다. 그 상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도대체 자네는 무엇 때문에 이 유태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나?"

"그는 무죄이니까요"

"이봐!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했는데, 그래 자네는 재판을 다시 열자는 말인가?"

"장군! 그는 무죄입니다"

"내게 있어서는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진실이라고 말하면 그게 진실이야. 자네만 입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 아닌가?"

"장군! 장군이 말씀하시는 걸 듣자니 구역질이 납니다. 나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읍니다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삐까르 중령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휴가를 얻어서 변호사를 만나 이 사실을 알렸고, 이것은 다시 한 상원의원에게 전해졌다. 만일 삐까르 중령이 진실을 발견했을 때 참모본부의 지휘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반역자 에스떼라지가 체포되고 드레퓌스라는 한 무고한 장교는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사건은 끝나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군부의 위신을 국가안보와 동일시한 군고위층의 어처구니없는 아집과 독선 때문에 사건은 눈사태처럼 커져갔다.

드레퓌스 대위의 형인 마띠외는 필사적이었다. 그는 마침내 "드레퓌스의 유죄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따라서 일부의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그 증거를 공개하자"는 속임수 기사를 한 신문에 싣게 하는데 성공했다. 아내 루시는 남편이 비밀 군사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보지도 못한 채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다시금 드레퓌스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드레퓌스사건의 진상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원의원은 진상을 밝힐 만한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유태인과 한통속이라는 비방과 모략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그러던 중 참모본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드레퓌스를 비난하는 데 앞장섰던 『르마땡』 지가 특종을 터뜨렸다. 문제의 '명세서' 사본을 입수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사태는 심각해졌다. 독일 무관 슈바르츠코펜은 '명세서' 사본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 사본은 슈바르츠코펜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참모본부 정보국 요원에게 도난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명세서'를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 필적이 에스떼라지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첩자의 이름을 알려줄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에스떼라지는 초조해졌다. 그는 외관상 훌륭한 군복무 기록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노릇을 하거나 돈많은 미망인을 꼬드겨 만든 돈으로 사치와 방탕을 즐기는 비열한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

지 않도록 온갖 음모를 꾸미고 다녔다. 참모본부는 진상을 알면서도 에스떼라지와 한통속이 되어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명세서'가 드레퓌스의 필적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에스떼라지와 개인적인 교분이 있는 한 증권브로커가 형 마띠외를 찾아가 '명세서'의 필적이 에스떼라지의 것임을 알려주었다. 마띠외는 즉시 에스떼라지를 범인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군당국은 조사를 시작하고서도 질질 끌기만 할 뿐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신문 지면에서는 불꽃 튀는 논쟁과 갖가지 추측, 허위보도들이 활개치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신문들은 당국을 두둔했다. "드레퓌스사건의 재심 요구는 군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프랑스를 파멸시키려는 유태인 조직의 국제적 음모이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군부의 위신과 신망을 실추시켜서는 안되고, 유태인은 군과 공직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편파보도 속에서도 최초로 드레퓌스가 결백하고 에스떼라지가 진범이라는 주장을 한 신문이 있었다. 『피가로』 지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반유태주의 신문의 아우성에 묻혀버렸다. 에스떼라지는 하루종일 신문사에 들어앉아, 있지도 않은 국제적 유태인 조직에 대한 날조된 정보를 끝없이 흘려보냈다. 하원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지럽히는 악질적인 선동꾼들을 발본색원하자고 결의했다. 에스떼라지는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그의 간첩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삐까르 중령이 변호사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것은 즉각 전 세계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전 유럽의 신문들은 "이제 프랑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애도했다. 드레퓌스를 옹호했던 유명한 정치가인 '호랑이' 클레망소는 이 신문들을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자유와 지성의 나라 프랑스는 전 세계의 조소를 한몸에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 젊은 신문기자는 "사기꾼들이 사기(詐欺)를 예찬했고 협잡꾼들이 협잡 기념비를 세웠다"고 개탄했다.

프랑스 국민은 둘로 갈라졌다. 드레퓌스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파와 재심 반대파가 그것이다. 공화제와 프랑스혁명의 이념에 반대하는 왕정복고주의자와 옛 귀족들, 드레퓌스를 감옥으로 보낸 군부, 반유태주

의에 몰두한 과격 가톨릭주의자, 보수적인 정치인들, 군국주의자들 및 이들과 연계된 신문들이 재심 반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군중을 선동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유태인의 음모를 경고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군의 위신을 존중하자고 주장했다. 양심적 지식인과 법률가들, 공화주의자와 일부 진보적 정치인들, 소수의 신문이 재심 요구파를 이루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을 유산계급 내부의 투쟁으로 보고 구경만 하던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이 뒤늦게 여기에 가담하였다.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의 지식인들도 지지성원을 보냈다. 그러나 아직 재심 요구파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드레퓌스의 미래는 여전히 깜깜한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897년 1월 13일, 절망의 분위기를 일거에 몰아내는 대폭풍우가 몰아쳤다. 정치가 클레망소가 운영하는 신문인 『로로르』 지에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논설을 실은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형식의 이 논설을 하루 밤 하루 낮, 그리고 또 하루 밤을 꼬박 새워 썼다. 이 글의 막강한 호소력은 협잡과 혼란, 날조와 비방의 연막을 걷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드레퓌스가 결백하고 에스떼라지가 진범인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밝힌 다음, 드레퓌스를 죄인으로 만들어 군부의 과실을 은폐하려 한 참모본부 무리들과 국방부의 장군들, 엉터리 증언을 한 필적감정 전문가, 드레퓌스에게 유죄를 선고한 첫번째 군사재판 및 에스떼라지에게 무죄를 선고한 두번째 군사재판을 무섭게 질타하였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합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이 지하에 묻히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취한 행동은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서두르기 위한 혁명적 조치입니다. 그처럼 많은 것을 지탱해왔고 행복에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인류의 이름에 대한 지극한 정열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나의 불타는 항의는 내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 법정으로 끌려간다 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만 청천백일하에 나를 심문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기다리고 있읍니다.

보잘것없는 신문이던 『로로르』 지는 이날 무려 30만 부나 팔려나갔다. 세계 각지에서 3만 통의 편지와 전보가 날아와 졸라의 호소를 환영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은 『뉴욕 헤럴드』 지를 통해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졸라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가없는 찬사에 사무쳐 있다. 군인과 성직자 같은 겁장이 위선자 아첨꾼들은 한 해에도 백만 명씩 태어난다. 그러나 잔 다르크나 졸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데는 5세기가 걸린다.

프랑스는 국제적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만일 드레퓌스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를 죄인으로 몰고 간 참모본부와 국방성, 군사법원이 범죄자가 될 판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각지에서는 대규모의 군중이 "졸라를 죽여라!" "유태인을 죽여라!" "군대 만세!"를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켰다. 수많은 유태인이 살상당하고 유태인 상점이 짓밟혔다. 재심 반대파의 선동에 흥분한 부랑한 하층계급이 폭동의 선두에 섰다. 그야말로 집단적인 정신적 광란이었다. 졸라의 집으로 흥분한 군중들이 몰려가 돌을 던졌다. 그러나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양심적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졸라에게 보내는 찬사를 성명서로 만들어 서명을 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내팽개쳤다. 책도 읽지 않았으며 극장에도 가지 않았다. 신문을 읽고 말다툼을 벌이고 주먹다짐을 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가 되었다. 즉 프랑스라는 드라마의 무대에서 전 세계 문명인이 관객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배우가 되었던 것이다. 드레퓌스사건의 열병이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에밀 졸라는 군법회의를 중상모략했다는 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프랑스는 다시 한번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발작적인 반유태주의 물결에 위협을 느낀 졸라는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여 영국으로 망명해야만 했다. 이윽고 프랑스 곳곳에서 유태인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이 조직되었다. 재심 요구파에 가담한 교수들은 대학에서 쫓겨났고 드레퓌스를 두둔한 정치가는 다음 선거에서 대부분 낙선했다. 곳곳에서 결투가 벌어졌다. 열병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데 1898년 8월 30일,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 사태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일찌기 삐까르 중령을 모함하기 위해 에스떼라지와 짜고 문서를 날조했던 참모본부의 앙리 중령이 진상이 발각될 위기에 몰린 나머지 면도날로 목을 찔러 자살해버린 것이다. 이로써 참모본부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재심 요구파는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자 '군국주의자와 반유태주의자들의 영웅' 에스떼라지는 재빨리 영국으로 도망쳤다. 뿐만 아니라 런던의 한 출판사에서 돈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출간했다. 자신은 이중첩자로서 상부의 명을 받고 독일의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독일 무관에게 접근했노라는 것이 내용이었다. 파리의 신문들은 일제히 참모본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재심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마침내 1899년 6월 3일, 고등법원은 1894년 12월의 재판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드레퓌스는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아직도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의아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대서양을 횡단하여 브레따뉴의 군형무소로 돌아왔다. 졸라도 망명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했으며, 또한 삐까르 중령도 감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승리의 길은 머나먼 가시밭이었다.

재심이 시작되었다. 드레퓌스는 단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밖에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변호사 라보리는 법정으로 가는 길에 괴한의 저격을 받아 부상했고 참모본부의 상관들은 거짓말을 계속했다. 군사법정의 심판관들은 '정상참작'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금고 10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표결의 결과는 5 : 2로 유죄였던 것이다.

졸라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다.

이것이 정상참작이란 말인가? 이것은 피고에 대한 정상참작이 아니라

심판관들에 대한 정상참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정상참작을 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그들이 규율과 양심 사이의 타협을 했다는 고백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정의를 구현하려는 외침은…… 머지않아 온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내일이면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물을 것이다. ……프랑스는 어디에 있는가?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훌륭한 정의의 병사 외에는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사실이었다. 전 세계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는 항의군중이 몰려들었고 이듬해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를 보이콧 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모든 것에 대한 보이콧 결의가 곳곳에서 채택되었다. "범죄자는 드레퓌스가 아니라 프랑스다"라는 사설들이 세계 언론을 장식했다. 장 조레스, 클레망소 등 진보적인 정치인의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1899년 9월 19일 드레퓌스를 특별사면시켰다. 그는 자유를 되찾았고 아내 루시를 포옹했다. 졸라는 라보리에게 이렇게 써보냈다.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제 지저분한 방법으로 정직한 사람과 도둑에게 똑같은 특별사면을 내린 것입니다"

드레퓌스가 특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동안 진실의 승리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은 실망했다. 그것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우기 삐까르 중령까지 곤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수년간 계속된 소란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드레퓌스를 잊고 싶어했다. 방대한 저작과 위대한 행동으로 인해 영원한 세계인의 양심이라는 찬사를 받은 졸라는 1902년 우연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석탄난로의 가스가 빠지지 않은 탓으로 잠자던 중 사망한 것이다. 타살의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아나톨 프랑스가 장례식 조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프랑스의 사회정의, 공화국의 이념, 자유로운 정신을 질식시키기 위해 손잡은 모든 폭력적 억압적 세력의 음모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그의 웅변은 프랑스를 잠깨웠다" "운명과 그의 용기가 그를 높은 곳으로 밀어올려 그로 하여금 한순간 인류의

양심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드레퓌스는 『악마도 일기』를 출간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졸라도 「진실」이라는 소설을 썼다. 드레퓌스사건에 대한 책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도 현실 그 자체보다는 더 극적일 수 없었다. 드레퓌스는 1904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1906년 7월 12일, 최고재판소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아냈다. 사건의 막이 내린 것이다. "발표하면 독일과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참모본부가 그토록 외쳐온 '중대한 기밀문서'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협잡과 음모를 위해 날조된 허위 증거문서들만이 쓰레기더미처럼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졌을 뿐이다.

드레퓌스는 같은 해 7월 22일,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프랑스 육군 소령으로 복귀하는 의식을 치르고 레종도뇌르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무개차에 올라타고 형 마띠외와 아들 피엘을 양옆에 세웠다. 그들이 연병장을 나섰을 때 자발적으로 모여든 20만 인파가 일제히 모자를 벗어들고 경의를 표했다. 창백한 드레퓌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손을 번쩍 들었다. "프랑스군 만세! 진실 만세!" "드레퓌스 만세! 정의 만세!"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두 차례의 전투에 참가하여 중령으로 진급하였으며 1935년 7월 11일, 오랜 투병생활 끝에 사망하였다. 조국 독일에 한없이 충성스러웠던 무관 슈바르츠코펜은 인간 드레퓌스의 고난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1917년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프랑스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들어봐라 프랑스인들아, 드레퓌스는 죄가 없다. 모두가 거짓이고 모략이다. 그에겐 티끌만한 잘못도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충 더듬어본 드레퓌스사건의 줄거리이다. 그러나 그 어떤 글도 사건 자체의 박진감과 극적 전개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 사건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소설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드라마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인간을 만날 수 있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드레퓌스, 양심적이고 강직한 군인 삐까르 중령, 진실의 승리를 향해 스스로 가시발길을 택한 용기있는 지성인 에밀 졸라, 현명하고 정열적인 정치인 클레망소,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운 수없이 많은 이름없는 사람들, 해외에서 지원한 각국의 양심인들, 이들 모두는 사기와 협잡, 무지와 편견의 책동을 분쇄하고 프랑스혁명의 정신과 공화제를 지켜낸 주인공들이다. 이들이 힘을 모아 쟁취한 드레퓌스사건의 승리는 몇 가지 면에서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거의 내전상태를 방불케 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통해 프랑스인들은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등 인권 존중의 가치를 몸으로 터득하게 되었다. 더우기 군부의 이익과 위신을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동일시한 군부와 군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킴으로써 정치에 있어서 민간 우위의 전통이 마련되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양심적 지식인 집단이 주도하는 여론의 승리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참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참다운 지성이 아니다"는 진리를 졸라는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같은 교훈은 곧 전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크게 보아 대립하는 두 세계관의 대결이었다. 드레퓌스라는 특정한 인물, 혹은 에스떼라지라는 악당의 존재가 이같은 대결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심 반대파는 주로 공화정에 반대하는 왕정복고주의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또 무시해야만 된다고 믿는 군국주의자들 혹은 국가주의자들, 유태인의 음모로부터 조국 프랑스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축출하고 말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편협한 가톨릭주의자들, 어떤 형태의 사회적 갈등도 유해하다고 확신하는 대소유자 즉 자본가들이었다. 반면 재심 요구파는 자유·평등·우애라는 시민혁명과 공화정의 정신 위에서만 국가의 번영과 안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공화주의자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들, 인권과 진실을 짓밟는 이상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법률가들, 어떤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

에도 반대하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추구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재심 반대파의 세계관은 발전하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놓으려 하고 인간을 사회와 국가의 주인이 아닌 종속물로 보는 반동적 세계관이다. 참모본부와 국방성의 장성들, 에스떼라지 같은 사람들은 이같이 퇴행적이고 사멸해가는 세계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서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패배했다. 반면 에밀 졸라와 삐까르 중령, 클레망소와 변호사 라보리 등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이 된 사람들은 진보적이고 성장해가는 세계관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승리했다. 진보적 세계관이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승리한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이란 늘 진보적 세계관의 승리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드레퓌스사건은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인 것이다.

무고한 젊은이가 갇혀 있습니다

날조조작 중단하고 강기훈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근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ANCC)의 필적감정에서 보여지듯이 고 김기설 열사에 대한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검찰과 공안당국의 희대의 조작극임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기훈후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110-490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101-2 아성B/D 4층
TEL:(02)743-9127·8 FAX:742-8289 PC:745-9564

진실과 양심의 승리를 위해

국민여러분 함께 움직여 주십시요!

이 선전물을 돌려 읽고 유서대필 조작극의 허구성을 주위에 널리 알립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금되어 있는 강기훈씨에게 면회와 격려 편지를 통해 진실의 승리에 대한 믿음과 힘을 줍시다.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18-1, 우편번호(437-120)
수번61번 강기훈

억울한 누명을 쓴 강기훈씨의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정성껏 보내주신다면 진실과 양심 승리의 그 날을 보다 빨리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좌번호 : 신탁은행 : 13101-2046606
상업은행 : 119-05-119332
국민은행 : 003-01-0570-152
농 협 : 084-01-132153
* 예 금 주 : 강기훈